

자발적인 준법행위의 촉발요인¹

박광배² · 조은경³

²충북대학교 심리학과 · ³한림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한국의 대도시(서울)와 소도시(청주)에 거주하는 일반시민 400명을 대상으로 그들이 현행법의 형평성 및 도덕성, 그리고 법집행기관의 정당성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으며, 그 지각된 형평성과 정당성이 과연 한국사회에서도 준법행위에 대한 촉발요인 혹은 양성요인이 되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결과는 가법지만 발생빈도가 높은 범법행위들에 대하여 경찰에 대한 태도와 법의 도덕성 및 형평성에 대한 판단이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이다. 경찰에 대하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 호감의 정도와, 법의 규정들이 적절한가, 그리고 법이 형평에 맞게 적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 가장 중요한 준법요인인 것으로 사료된다. 경찰이 시민들과 더욱 친밀해지고,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획득한다면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준법경향을 크게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된다.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학문이 모두 원인에 주목하는 반면, 준법행위에 대해서는 '이유'가 관심의 대상이 된다. 법이나 학문이 준법행위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사람들이 준법하는 이유를 파악하고, 그 이유를 활성화함으로써 자발적인 준법행위를 유도하기 위해서이다. 예를 들어 탈세가 많이 자행된다고 해서 세무사찰만을 반복적으로 실시하면 단속에 소모되는 국가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공권력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유발하여 사회의 잠재적인 불안정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 보다는 세법이 어떤 경우에, 왜 자발적으로 지켜지는지를 파악하여 긍정적인 요인을

권장하는 것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더 바람직하다. 다시 말해서 강제성에 의존하여 이루어지는 법치는 매우 위태로울 뿐만 아니라,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인 사회운영방안이다. 반면에 자발성에 의존하여 이루어지는 법치는 많은 부수적인 사회적 이득을 창출한다.

특히 심리학이 준법의 이유에 대하여 보다 진지한 관심을 가져야할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이 법의 기본적인 인간관 혹은 행위에 대한 자유의지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한 방편이기 때문이다. 법이 범죄자를 처벌하는 이론적 근거는 범죄의 고전이론이다. 범죄의 고전이론은 기본적으로 범죄자를 자유의지에 의해 행위하는 주체로 간주한다. 범죄자는 자유의지에 의해 범죄행위의 여부를 결정하

1. 본 연구는 경찰청 산하 치안연구소의 재정지원으로 이루어졌다.

고 실행하므로 그의 행위에 대한 원인은 그 자신의 의지이고, 그 행위의 결과에 대한 책임도 그 자신에게 귀착된다고 본다. 반면에 심리학은 전통적으로 범죄행위에 대한 결정론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 심리학은 범죄행위가 의지의 산물이라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 의지는 다시 과거의 경험, 학습, 생리현상, 뇌구조 등에 의해 생성된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심리학이 조망하는 의지는 '자유의지'가 아니라 '제한적 의지'이다. 행위에 대한 궁극적인 이해는 의지 혹은 욕구를 제한하고 결정하는 보다 내재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해야만 비로소 가능하다고 본다.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심리학이 법의 기본적인 인간관을 수용하는 한 방법은 준법의 이유를 규명하는 것이다. 준법은 합목적적 행위로 간주된다. 준법에 관한 연구들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손실을 극소화하고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자신의 도덕관 및 가치관을 실현하기 위하여, 혹은 정부나 체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기 위하여 준법한다고 가정한다. 즉, 미래에 달성할 목표 혹은 목적을 위하여 준법행위를 한다는 관점이다. 법과 심리학은 모두 준법행위를 미래지향적이고 합목적적인 자유의지에 의한 행위로 개념화하기 때문에 준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심리학이 심각한 기본전제의 차이를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심리학이 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준법행위의 이유, 그리고 준법성에 대하여 보다 진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준법의 이유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이 준법하는 이유는 그들이 법에 대하여 두가지중 한가지의 가치관 혹은 성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Carroll, 1987; Tyler, 1990). 하나는 이해타산성이고, 다른 하나는 규범성이다.

1. 준법을 실행하는 두 가지 성향

이해타산성(instrumental perspective)을 가진 사람은 준법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개인적 이득의 여부를 채택하고 있는 경제인이다. 즉, 가능한 이득과 가능한 손해를 비교하여 이득이 큰 쪽의 행위를 선택하는 사람이다. 이때 처벌의 강도와 처벌될 가능성은 법을 어기는 경우의 잠재적 손실로서 간주된다. 이런 사람에게는 처벌의 두려움이 가장 큰 준법요인이다. 예를 들어, 적발될 가능성이 거의 희박한 경우, 법에 대하여 이해타산적 성향을 가진 사람은 교통법규를 어기거나, 탈세를 하거나, 혹은 경우에 따라서 더 큰 범죄행위를 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법에 대하여 이해타산적 성향을 가진 사람의 준법여부는 외부적 상황에 의해 좌우된다. 만약 대부분의 사회구성원이 법에 대하여 이러한 이해타산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정부는 어쩔 수 없이 강제성에 의존하여 법치를 구현할 수밖에 없다. 이 관점은 또한 법과 처벌의 제지효과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인간관이다.

법에 대하여 규범성(normative perspective)을 가진 사람은 준법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고, 법은 사회구성원의 합의에 기초하므로 개인은 준법해야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의 경우에는 적발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교통법규를 어기거나 탈세를 하지 않을 것이다. 즉, 외부적 상황에 따라 준법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준법의 당위성이 규범으로 내면화되어 있는 사람이다.

법에 대한 사람들의 규범적 성향을 형성하는 요인은 두 가지가 있다고 사료된다. 하나는 법이 가지는 도덕성(morality) 및 형평성(equity)이고, 다른 하나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사법부, 행정부, 경찰 등)이 가지는 권위의 정당성(legitimacy)이다. 법의 도덕성과 형평성 여부에 의하여 사람들은 법을 정의로운 것으로 지각하거나 정의롭지 않은 것으로

지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법이 기본권(e.g., 표현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부도덕성) 구조적으로 특정계층의 사람들을 차별을 한다면(불형평성) 사람들은 법이 정의롭지 않다고 지각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준법에 대한 규범적 성향을 버리게 될 것이다. 또한 법이 사람들의 형평개념과 동떨어진 형평성을 구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법의 도덕성이 유실되어 규범적 성향을 해칠 수 있다(Hauge, 1994). 예를 들어 시민들은 납세의 수직적 형평성에 주목하는 반면, 세법은 수직적 형평성을 무시하고 수평적 형평성만을 추구한다면, 사람들은 세법의 도덕성을 의심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많은 탈세를 유발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법에 대한 사람들의 규범적 성향을 형성하기 위해서 법은 사람들이 가지는 도덕관념 및 형평관념에 기초하여야 한다.

법집행 기관이 가지는 권위의 정당성은 그 기관이 법을 통하여 사람들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정당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지의 여부를 의미한다. 가장 흔한 예는 우리가 거리에서 자주 목격하는 경찰관과 운전자 사이의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실랑이다. 그러한 실랑이는 경찰관이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법은 행동통제를 위한 사회적 수단이다. 그런데 그 수단을 사용하는 기관이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고, 공권을 인정받지 못하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규범적인 준법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 사람들이 법집행 기관에게 인정하는 정당성과 권위는 상당부분 경험에 의해서 형성된다.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경찰이나 사법부가 공정하게 법을 집행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은 경찰이나 사법부의 정당성과 권위를 인정하게 될 것이고, 경찰이나 사법부의 정당성이 인정될수록 사람들은 준법에 관한 규범적 성향을 더욱 강화하게 된다.

준법의 이유에 대한 심리학적 관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해타산적인

성향이나 규범적 성향에 의해 준법한다. 이해타산적 성향을 가진 사람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준법한다. 반면에 규범적 성향은 법의 형평성(도덕성)과 법집행 기관이 가지는 권위의 정당성에 의해 좌우된다. 만약 대다수의 국민이 이해타산적 성향에 의해 준법한다면,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공권력과 시민이 언제나 긴장상태를 유지하게 되어 사회의 불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법에 대한 국민들의 규범적 성향을 강화하여 자발적인 준법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규범적 성향의 강화를 위해서는 법의 형평성 및 도덕성을 확보하고, 법집행 기관의 정당성과 권위를 인정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2. 처벌의 두려움

처벌의 두려움이 준법의 이유라고 보는 관점은 사람들이 이해타산에 의해 준법한다는 경제학적 관점이다. 처벌의 두려움은 범법에 대한 비용으로 간주되어 준법이 범법보다 이득으로 인식되게 하는 기능을 한다고 간주된다. 이 관점은 또한 처벌의 제지효과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관점이기도 하다. 이 관점에 의하면 처벌확률이 높고, 처벌의 강도가 셀수록 준법경향이 증가할 것으로 본다. 그런데 이 관점의 문제점은 이 관점에 기초한 법치와 사회통제는 매우 비효율적이고, 비용이 많이 소모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정부는 높은 처벌확률을 유지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감시와 단속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끊임없는 감시와 단속은 정부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조장하여 범법을 오히려 증가시키고 정부는 더 심한 감시, 단속, 처벌을 해야하는 악순환에 빠지기 쉽다.

정부가 국민들의 준법성향을 향상하기 위해서 어떠한 법정책을 실시해야하는지는 우선 국민들이 왜 준법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사람들이 처벌의 두려움 때문에 준법하는지에 관한 연

구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뉘는데, 하나는 직접적으로 처벌확률 및 처벌강도와 범법/준범의 정도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들이고, 다른 하나는 법과 처벌의 제지효과를 검증한 연구들이다. 법과 처벌이 제지효과를 가진다면, 그것은 사람들이 처벌의 두려움 때문에 준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980년대에 많은 학자들이 처벌확률 및 처벌강도와 준범성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들은 각기 다른 형사정책을 실시하는 다른 나라들 혹은 다른 고장들을 비교하거나,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처벌확률 및 강도를 측정하여 그 지각된 처벌인식과 그들의 범법행위 사이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들이었다. 이 연구들의 일관된 결과는, (1) 처벌의 강도와 범법/준범행위 사이에는 관련성이 없고, (2) 처벌확률과 범법/준범행위 사이에는 미약한 관련성이 있는데, (3) 도덕관념이나 사회적 체면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이 미약한 관계가 사라진다는 것이다(Teevan, 1976; Paternoster et al., 1983; Tittle, 1980; Saltzman et al., 1982). 다시 말해서, 처벌확률과 범법/준범행위 사이의 미약한 관계는 처벌 그 자체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인 체면 혹은 도덕적 자기개념이 손상되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가장 최근에 Gertz and Gould(1995)도 611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종래의 연구들과 동일한 결과를 산출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처벌확률과 범법/준범행위 사이의 미약한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들로서 과거에 범법한 경력이 있는지의 여부와 특정한 범법행위를 부도덕하다고 인지하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법을 엄하게 집행한다고 해서 준범행위(범법행위)가 증가(감소)하지 않으며, 법의 엄격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범법/준범행위에 대한 주변사람들(친구, 친지, 가족 등)의 태도와 행위자 당사자가 가지는 도덕적 자기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지구상의 대다수의 국가들, 특히 대부분의 서구 사회에서는 사형제도를 폐지하였다(Haney & Logan, 1994).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미국내 몇 개의 주의 대법원에서는 사형제도가 ‘잔인하고 이상한(cruel and unusual)’ 처벌이라는 이유로 미연방헌법 수정 제8조(the Eighth Amendment)에 위배된다는 위헌판정을 한 바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미국 국민들은 사형제도에 찬성하고 있다.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서 행해진 조사에 의하면 텍사스 주민의 85%, 캘리포니아 주민의 80%가 사형제도에 찬성한다(Kaplan, 1990).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흔히 사형의 제지효과를 그 이유로서 제시한다. 심지어 1994년 11월에 오하이오 지방법원(County Court)에서 Anthony Calabrese 판사는 이 중살인범에게 사형을 선고하면서 그의 처형장면을 TV로 생중계할 것을 명하였다. Calabrese 판사의 이유는 미래의 흉악범들에게 확실한 경종을 울린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형제도가 범죄감소효과를 가지는지를 검토한 연구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다(Bowers, 1988; Bailey & Peterson, 1989). Sellin(1968), Zeisel(1976), Bowers & Pierce(1980)는 미국내의 각 주들을 비교한 결과 사형제도를 채택하는 주에서 오히려 범죄증가율이 더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같은 결과가 Lempert(1981)와 Bruck(1985)의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Bailey(1990)는 1976년과 1987년 사이에 TV에 보도된 사형수 처형소식(뉴스)과 뉴스보도 이후에 발생한 범죄를 조사한 결과 처형소식이 범죄를 감소시킨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였다.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들과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의 범죄발생율을 비교한 연구들도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Archer & Gartner, 1984; Wilkes, 1987). Zimring & Hawkins(1986)는 사형제도의 제지효과에 관한 연구들을 종합한 후, “사형이 흉악범죄의 발생을 억제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기우제가 비를 오게 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과 같다(the

death penalty is about as relevant to controlling violent crime as rain-dancing is to controlling the weather)”고 결론지었다(p.14). 사형제도와 같은 엄격한 법의 적용이 제지효과를 가지지 못하는 것은 첫째로 벌의 객관적 심각성이 범죄자에 의해 지각된 주관적 심각성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고, 둘째로 특히 범행 순간의 주관적 심각성은 평상시의 주관적 심각성과도 매우 다르기 때문이라고 한다(Glasser et al., 1983; Erickson & Gibbs, 1980; Klepper & Nagin, 1989).

처벌의 제지효과는 소극적 회피학습에 의존한다. 따라서 소극적 회피학습이 비효율적인 경우에는 처벌의 제지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범죄성을 가진 사람들과 반사회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특히 처벌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생리심리학 연구들이 있다. 인간과 동물은 소위 ‘놀람반사(startle reflex)’라고 불리는 방어기제를 가지고 있다. 특히 공포심이 생기거나 불쾌한 감정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에 예견치 못한 소음이 들리면 놀람반사현상이 쉽게 발생한다. 놀람반사에 의해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은 눈을 깜박거리는 것이다. 눈깜박임과 같은 놀람반사는 공포, 혐오, 불쾌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상태에서는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준비상태에 놓이게 되고, 유쾌하거나 즐거운 감정상태하에서는 그 발생이 억제된다고 한다(Vrana, Spence, & Lang, 1988; Davis, 1989). Patrick(1994)은 눈깜박임과 같은 놀람반사를 이용하여 일반인들과 반사회성 성격장애자들이 처벌이 가해지거나 혐오스러운 자극이 주어지는 경우 다르게 반응하는지를 실험을 통하여 비교해본 결과, 반사회성 성격장애자들은 처벌이나 혐오스러운 자극이 주어지는 동안 놀람반사반응을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 사실이 암시하는 것은 반사회성 성격의 소유자들에게는 처벌이나 혐오자극이 불쾌한 감정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처

벌이 반사회성 성격장애자들에게 불쾌한 감정을 유발하지 않는다면, 이들에 대한 처벌의 범죄제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Vaughn et al.(1995)는 일본의 마약사범의 실태와 마약단속법의 변천상황을 19세기말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시대별로 상세히 분석하면서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의 강화가 마약사범을 줄이는데 기여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2차대전 직후에 각성제(stimulants) 중독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최근에 들어 다시 중독자가 늘었다고 한다. 2차대전 직후 각성제 중독자의 증가는 정부가 전쟁수행을 위해 각성제를 대량 제조하여 유포한 결과 때문이며, 최근에 나타나는 중독현상은 주로 제약회사들의 합법적인 신제품개발(피로회복제, 스테미너 보강제, 숙취회복제 등)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 일본에서 처벌을 강화한 마약단속법과 그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긍정적 반응은 일본을 경유하여 미국에 유입되는 마약(narcotics)의 경로를 차단하려는 미국 정부의 압력과 미국내에서의 마약퇴치운동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일본에서 중독자를 많이 유발하는 마약류는 미국이나 유럽에서의 그것과 매우 다르다. 따라서 미국과 유럽에서 사회문제를 유발하는 마약의 제조원과 유통구조는 거의 일본내의 마약실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또한 미국과 유럽에서 마약에 의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 예를 들면 도시의 황폐화 등이 일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압력과 영향으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마약소비를 단속하려는 일본의 최근 경향은 동양사회의 특징인 비공식적 사회통제(informal social control)의 전통을 약화시키므로서 오히려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동양사회의 질서는 전통적으로 정부의 공식적인 통제보다는 가족과 친지, 그리고 이웃들을 비롯한 비공식적 사회구조에 의하여 효율적으로 유지되어

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마약유통을 사전에 철저히 봉쇄할 필요는 있지만, 마약사용자를 제도적으로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재고의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고도로 도시화된 현대의 동양사회에서도 전통적인 비공식적 사회통제가 효율적인 질서유지의 근간이 될 수 있을지는 다소 회의적이지만, Vaughn et al.(1995)의 이러한 관점은 앞서 법의 엄격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법/준법행위에 대한 주변사람들(친구, 친지, 가족 등)의 태도와 당사자가 가지는 도덕적 자기개념이라는 연구결과들과 일맥상통한다.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벌의 두려움 때문에 준법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엄격한 법적용이 제지효과를 기대만큼 크게 가지지 못한다고 사료된다. 준법행위는 처벌강도와 처벌확률 등과 같은 외부적 요인보다는 내면화된 규범에 더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그러한 내면화된 규범을 구성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준법에 대한 법의 도덕성 및 형평성의 효과

법의 도덕성(morality)이란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의 논리성, 적절성, 그리고 공정성(fairness)을 의미한다(Robinson & Darley, 1995). 특정한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그 행위의 비난가능성(blame-worthiness)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하거나 관대한 경우에 그 법은 공정성을 잃게 되고 도덕적으로 결함을 가지는 법이 된다. 예를 들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공직자가 가벼운 처벌을 받고, 과실에 의해 사고를 낸 전철기관사가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면 법의 도덕성이 의심받게 된다. 따라서 도덕성의 개념은 행위와 처벌 사이의 균형에 관한 개념이다. 반면에 법의 형평성(equity)은 서로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의 균형성을 말한다.

비난가능성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 범법에 대한 처벌의 정도는 일반적인 보통사람들이 적절

하다고 생각하는 처벌의 수준을 반영해야한다는 이론적 관점을 유럽에서는 ‘거울이론(mirror theory)’이라고 부르고, 미국에서는 ‘정당한 댓가 이론(just deserts theory)’이라고 부른다(Hauge, 1994). 민주국가에서는 국민이 주권자이고, 따라서 법과 처벌은 국민 대다수의 태도와 그들의 태도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다시 말하면 법은 그 정당성(legitimacy)을 국민들 속에서 확보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유럽국가들의 경우 법정에서 실제 선고되는 형량과 사람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형량을 비교한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그 두 형량이 서로 일치하고 있다고 한다(Walker & Hough, 1988). 그런데 노르웨이의 경우 마약사범에 대한 법정형량이 1964년 이전에는 최고 6개월 징역이었는데, 그 이후 계속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1984년부터는 21년의 징역형이 법정 최고형이 되었다고 한다. 이런 경우, 일반 사람들의 통념이 변해가는 속도보다 처벌의 강도가 훨씬 빨리 증가하여 사회통념과 법 사이에 괴리가 생길 가능성이 있고, 그 괴리에 의하여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Ødegård(1995)는 노르웨이를 비롯한 유럽의 13개국의 자료를 기초로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의 심각성이 국민들의 일반적 태도를 반영하는지를 알아본 결과 매우 긍정적인 결론을 도출하였다.

미국의 형법은 사고나 가해의 종류를 대체로 4가지로 단계화하고 있다: (1) 잘못이 없는(faultless) 순수한 사고; (2) 주의의무의 태만(negligent)에 의한 가해 혹은 사고; (3) 경계망동이나 경솔(reckless)에 의한 가해 혹은 사고; (4) 사전에 위협의 존재를 숙지한 의도적인(intentional) 가해 혹은 사고. 예를 들어 타인의 집이나 토지에 손상을 준 경우에는 첫 번째(순수한 사고)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범주에 대하여 손상을 발생시킨 당사자에게 책임이 귀착되는 반면, 피해자의 동의를 결여한 강간의 경우에는 세 번째(경솔)와 네 번째(사전 숙

지)의 경우만 가해자에게 책임이 귀착된다. Robinson & Darley(1995)는 미국의 보통 시민들이 사거나 범죄의 죄가를 판단할 때 형법이 정한 단계 및 책임귀인과 일치한 판단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가상적인 사고/범죄 시나리오들을 이용하여 방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전체적으로는 일반시민들의 판단과 법이 일치하지만 세부적으로는 많은 괴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예를 들어 동의를 결여한 강간의 경우, 일반시민들은 태만에 의해 동의를 결여한 경우에도 책임귀속을 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미국 형법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동의에 의한 것일지라도 처벌할 뿐만 아니라 태만, 경술, 숙지에 의한 경우에 동일하게 엄한 처벌을 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동의에 의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처벌하지 않아야 하고, 태만, 경술, 숙지에 의한 경우에 각기 다른 처벌을 해야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위에서 설명한 Ødegård(1995)의 연구와 더불어 법의 도덕성의 중요함을 인식하는 연구의 대표적 예이다.

Grasmick & Green(1980)과 Jacob(1980)은 미국에서 각각 400명과 176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현행법의 도덕성을 인정하는 사람일수록 그 법을 준수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r=0.55$ 와 $r=0.47$). Meier & Johnson(1977)은 632명의 성인을 조사하여 대마초 흡연을 부도덕한 행위로 간주하는 사람일수록 대마초 흡연을 적게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r=0.21$). Silberman(1976)와 Tittle(1980)은 각각 174명의 대학생과 1,993명의 성인을 조사하여 현행법을 부도덕하다고 지각하는 사람일수록 준법의지가 낮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위의 연구들은 법의 도덕성 및 형평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준법의지 및 준법행위가 서로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들의 공통적인 결함은 인과관계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행법의 부도

덕성에 대한 지각이 준법의지를 낮추는 것인지, 아니면 낮은 준법의지를 가진 사람이 조사대상이 되었을 때 현행법이 부도덕하다고 응답하는 것인지가 분명치 않다. 만약 후자의 경우라면, 현행법이 부도덕하다는 응답은 낮은 준법의지에 대한 평계에 불과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음에 소개되는 연구는 조사방법이 아닌 실험방법을 통하여 법의 불형평성이 준법행위를 해친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한다. 류운상·박광배·김유진(1996)은 실험을 통하여 세법의 형평성이 파괴되면 탈세경향이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서로 수입의 정도가 다른 사람들 사이의 형평성을 수직적 형평성, 수입의 정도가 유사한 사람들 사이의 형평성을 수평적 형평성, 그리고 개인과 정부의 관계에서 성립하는 형평성을 교환적 형평성이라 정의한 후, 각 형평성이 파괴된 조건에서의 탈세행동과 그러한 형평성 파괴가 존재하지 않는 조건에서의 탈세행동을 비교한 결과 형평성의 종류를 불문하고 형평성이 파괴된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탈세행동이 명확하게 증가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4. 법집행 기관의 정당성과 준법의 관계

Gibson(1967)은 영국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경찰에 대한 지지도와 청소년 비행 사이에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r=0.41$). Jaros & Roper(1980)은 미국에서 600명의 대학생을 조사하여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일반적인 지지의 정도와 대법원 판결을 준수하려는 의지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Tittle(1980)은 미국에서 1,993명의 성인을 조사하여 법집행 기관의 권위성에 대한 인정도와 가벼운 범법행위 사이에 부적인 상관관계를 발견하였다. Aberbach & Walker(1970)는 855명의 디트로이트 주민을 조사하여 흑인들 사이에서는 정치에 대한 불신이 폭동하려는 의지와 강한 관련성이 있고, 백인

들 사이에서는 극단주의자(백인우상주의자)에게 투
표하려는 의지와 강한 관련성이 있음을 발견하였
다. 이밖에도 정부, 사법부, 경찰 등에 대한 불신,
지지도, 권위인정이 데모, 폭동의지, 폭력적인 군
중집회에 대한 태도, 파업, 군대와 병역에 대한 태
도 등과 관련을 가진다는 자료를 많은 연구들이
보고하고 있다(Craig & Wald, 1985; Citrin, 1977;
Muller, 1972, 1977, 1979; Muller et al., 1982;
Seligson, 1980; Useem, 1982; Westbrook, 1980;
Wright, 1976).

앞서 인용한 법의 도덕성 및 형평성에 관한 연
구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연구들도 인과방향의
애매성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하여 Tyler(1990)는 Chicago에서 2년에 걸
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첫째에는 1,575명을 조사
하고, 그 중에 804명을 다음해에 재조사하였다. 첫
해에 경찰과 사법부의 권위에 대한 응답자들의 경
험과 평가를 조사하고, 두 번째 해에 그들의 준법
행위를 조사한 후, 그 둘 사이의 관계를 검토한
결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이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준법행위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인, 정치적인 요인, 성별, 나이, 사회경
제적 지위 등을 통제한 후 산출된 것이다. 따라서
이 상관관계는 경찰과 사법부가 가지는 권위의 정
당성에 대한 평가가 준법행위에 대하여 직접적으
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로 경찰/사
법부의 정당성과 함께 유의미한 영향력을 산출한
요인들을 영향력의 크기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나이, 개인적 도덕관념, 성별, 주위사람들의
인정. 즉, 나이가 많을수록, 도덕관념이 강할수록,
여자일수록, 주위사람들의 준법의지가 강할수록
준법성향이 높다는 것이다. 반면에 처벌의 두려움,
정치상황에 대한 평가, 경제적 지위, 교육정도, 보
수성 등은 위의 유의미한 요인들이 가지는 영향력
에 더하여 추가적인 영향력을 보여주지 않았다).
즉, 사람들이 경찰 및 사법부의 권위를 인정할수

록 준법성향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Tyler(1990)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경찰/사법부
에 대한 권위 평가와 준법행위 사이의 관계를 중
재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검토하였다. 다시 말해
서 권위 평가가 높으면 준법행위가 증가하는 경향
이 있으나, 이 관계가 어떤 경우에는 좀 더 강하
고, 어떤 경우에는 좀 더 약한지에 대한 물음이다.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한 자료분석 결과, 권위 평가
와 준법행위 사이의 관계는 경찰 및 사법부에 대
한 사람들의 경험에 따라 달라진다는 결과가 도출
되었다. 자신들의 경험에 비추어 경찰과 사법부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서는 권위 평가와
준법행위 사이의 관계가 강하게 도출된 반면, 경
찰과 사법부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에게는 그 관계가 약하게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졌
다.

연구 목적

준법의 이유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법의 도덕성
과 형평성, 그리고 법집행 기관이 가지는 권위의
정당성이 준법행위의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
인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이 연구들이 강조
하는 법의 형평성과 법집행기관이 가지는 권위의
정당성은 규범적, 객관적으로 정해지는 형평성과
정당성이 아니라, 행위주체가 주관적으로 지각하
고 판단하는 형평성과 정당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도시(서울)와 소도시(청주)에 거주하
는 시민들이 현행법의 형평성 및 도덕성, 그리고
법집행 기관의 정당성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으며,
그 지각된 형평성과 정당성이 과연 한국사회에서
도 준법행위에 대한 촉발요인 혹은 양성요인이 되
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비록 외국
의 기존연구들이 준법행위에 대하여 처벌의 두려
움이 가지는 기능을 일반적으로 부정하고 있지만,
준법행위는 법제도, 문화, 사회적 가치관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으므로, 한국시민들의 자발적인 준법행위가 처벌의 두려움에 의해 이루어지는지의 여부도 실증적으로 파악해야할 문제이다. 이를 위하여 서울과 청주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조사하였다.

방 법

1. 조사대상과 절차

조사대상은 서울과 청주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성인 400명이었다. 이 400명은 각 전화국번의 가입자수에 비례하여 표집하였다. 각 전화국번에서 표집될 대상자의 수가 정해지면 네자리로 이루어진 숫자들중 정해진 표집수만큼의 숫자를 컴퓨터의 난수산출기(random number generator)를 이용하여 표집하였다. 응답원은 표집된 전화번호와 주소 소지하고 해당 국번지역에 가서 전화를 걸었다. 만약 20세 이상의 성인이 전화를 받으면 본인에게 응답을 요청하고, 20세 미만의 미성년이 전화를 받으면 가구내의 20세 이상된 성인을 바꾸어 줄 것을 요청한 후, 응답을 요청하였다. 응답요청이 수락되면 15 - 20분 내에 해당 가정에 도착하여 응답을 실시하였다. 응답은 30 - 40분이 소요되도록 구조화된 양식을 이용하여 실시되었다.

각 전화국번내에서 가능한 무선표집(random sampling)을 시도하였으나 예산상의 한계 때문에 표본의 수가 작아서 실질적인 무선표집의 효과, 즉 대표성 표집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는 미지수이다. 그러나 적어도 현재 한국의 도시에서 전화가 걸려된 가정은 거의 없으므로 체계적으로 편파된 표집이 되었다고는 사료되지 않는다.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는 경찰이나 사법부가 보유하는 기록에 기초한 표본에 비하여 두 가지 중요한 장점을 지닌다.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을 고루 조사하여 자료의 생태계적 타당도(ecological validity)를 높일 수 있다는

표 1. 성별, 지역, 연령별 표본숫자

성별	지역	연령				총
		20대	30대	40대	50대	
남자	청주	25	25	24	25	99
	서울	25	25	25	25	100
	전체	50	50	49	50	199
여자	청주	25	25	23	25	98
	서울	25	25	25	25	100
	전체	49	50	48	50	198
전체		100	100	97	100	397

숫자는 빈도를 의미한다.

것이다. 둘째는 응답자의 익명성을 보장하여 진솔한 반응을 유도할 수 있다. 다만 응답자들로 하여금 면담에 응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예상되었으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응답자들에게 약간의 사례(5,000원권 전화카드)를 하였다.

조사는 1996년 여름과 가을에 걸쳐서 수행되었다. 조사에 응한 응답자들을 성별, 지역, 연령층별로 분류하면 <표 1>과 같다. 청주지역에서 계획된 표본숫자보다 3명이 적게 표집되었는데, 그 이유는 그중 2명(여자)은 면담도중에 면담을 지속하기를 거부하였고, 나머지 한명(남자)은 불성실한 응답이 너무 많아서 자료를 신뢰할 수 없었으므로 분석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이다.

2. 면담내용

면담을 위하여 약 150개의 질문항목으로 구성된 구조화된 면담양식(structured interview form)을 제작하였다. 이 양식은 기존연구들과의 비교를 위하여 Tyler(1990)와 Robinson & Darley(1995) 등의 기존연구들에서 사용된 질문항목들을 참고하여 제작되었다. 질문항목들은 8개의 범주로 이루어졌는데, 그 8개의 항목범주는 다음과 같다: 사회인구학적 배경; 지난 12개월 동안의 사소한 범법경험(교통법규위반, 오물처리, 음주운전, 소란, 가벼운 절도 등); 범법경험에 대한 처벌확률의 추정과 처벌

의 지각된 강도; 준법에 대한 친인척의 의견; 준법과 관련된 본인의 도덕관념 및 규범; 법의 도덕성과 형평성 판단; 지난 12개월 동안 경찰과 사법부에 대한 이해당사자로서의 직접 경험의 여부; 경찰과 사법부에 대한 전반적 평가(절차의 공정성, 결과의 공정성, 신뢰성, 권위인정).

(1) 사회인구학적 배경

사회인구학적 배경은 응답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 지위, 교육정도, 경제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들로 구성된다.

(2) 지난 12개월 동안의 범법경험

지난 12개월 동안의 사소한 범법경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혹 범할 수 있는 범법행위들에 대하여 그 정도와 빈도를 탐문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설명한 범죄의 고전이론에 기초하여 이러한 사소한 범법행위의 정도와 빈도는 보다 심각한 범죄행위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다시 말하면 본 연구에서 측정되는 범법행위는 실제로 존재하는 범법행위의 ‘點推定(point estimate)’을 위한 자료가 될 수는 없지만, 준법성 혹은 범죄성을 대표하는 ‘변인(variable)’ 혹은 범죄행위에 대한 고전이론적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범법경험의 탐문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응답자가 과거의 범법경험을 망각할 수 있다는 것과 솔직하지 않은(부정직한) 응답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범법행위의 망각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벼운 범법행위를 망각할 수 있지만, 그 망각은 행위자의 특성이나 행위의 특성과는 무관하게 무작위로 발생한다는 것을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Gottfredson & Hindelang, 1977; Lehen & Skogan, 1981; Schneider, 1977). 따라서 망각은 범법행위 측정에 대하여 일종의 무선오차(random error)로 작용하고, 본 연구에서 검증하려는 변인들 사이의 관계를 과소평가하는 요인이 될 수는 있어도, 과대평가하는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믿어진다. 또한 박광배(1992)는 청소년의 비행, 범죄행위, 성행위에 대한 조사연구들에서 솔직하지 않은 응답의 정도를 추정한 연구들을 개관하였는데, 이 연구들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각종 행위들에 대한 부/정직한 응답률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다소의 부정직한 응답이 예상되지만, 응답의 부/정직성에 관한 기존연구들이 제시하는 자료를 이용하여 솔직한 응답률을 추정해낼 수 있다.

(3) 범법경험에 대한 처벌확률의 추정과 처벌의 지각된 강도

처벌확률의 추정과 처벌의 지각된 강도는 기존 연구들(Gertz & Gould, 1995; Tyler, 1990)에서 사용된 질문방식을 채택하여 측정하였다.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이 10번 음주운전을 한다면 그 중에서 몇 번 단속에 적발될 것으로 예상합니까?” 등의 질문이 처벌확률을 추정하기 위한 항목으로 이용되었다. 처벌의 지각된 강도에 관한 질문의 한 예는 “음주운전에 대한 현행 처벌규정은 엄한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관대한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이다. 응답자가 현행 처벌규정을 알 수 있도록 현행 처벌규정을 제시해주었다.

(4) 준법에 대한 친인척의 의견

준법에 대한 친인척의 의견은 행위당사자가 인식하는 주변사람들의 의견을 말한다. 행위당사자가 인식하지 못하거나 잘못 인식하는 주변사람의 실제 의견은 행위자의 행동에 대하여 의미있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친인척을 직접 면담하지 않고, 응답자 본인이 인식하는 친인척의 의견을 탐문하였다. 친인척의 의견에 관한 질문의 한 예는 “만약 당신이 부모/남편/아내와 함께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법정 최고속도인 시속 110km/hr를 초과하는 경우, 당신의 부모/남편/아내가 법정속도의 준수를 권유할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이다.

(5) 준법에 대한 도덕관념과 규범

준법과 관련된 본인의 도덕관념과 규범은 일종의 인성특질(personality construct)이라고 사료되므로 8 - 10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소척도를 심리측정 이론에 기초하여 제작, 사용하였다. 이를 위하여 20개 정도의 예비문항을 제작하고, 이 예비문항들에 대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한 예비연구를 수행한 후, 신뢰도와 타당도가 우수한 문항들을 가려내어 소척도를 구성하였다. 이 소척도에 포함된 문항의 한 예는 “비록 어떤 법규가 불합리할지라도 그 법규는 존재하는 한 지켜져야 한다”이다. 이러한 문항들에 대하여 응답자는 ‘찬성 - 반대’의 응답을 하였다.

(6) 법의 도덕성과 형평성 판단

앞서 설명하였듯이 법의 도덕성은 행위와 처벌 사이의 균형에 관한 개념이고, 법의 형평성은 서로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의 균형성에 관한 개념이다. 법의 도덕성에 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의 예는 “살다보면 누구나 한두번 범할 수 있는 가벼운 범법행위들에 대한 법은 현재보다 더 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관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현재의 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이다. 법의 형평성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의 예는 “수입이 높은 사람이 내는 세금과 수입이 낮은 사람이 내는 세금을 비교해볼 때 현행 세법은 모든 납세자들에게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이다.

(7) 경찰과 사법부에 대한 이해당사자로서의 직접 경험의 여부

경찰과 사법부에 대한 경험의 유무는 두개의 기준에 의해서 판단되었다. 첫째는 경찰 및 사법부와의 직접적, 개인적 접촉의 여부이다. 예를 들어 제3자의 사건을 전화를 통해 신고하고, 신고 후 후속접촉이 없었던 경우는 제외된다. 둘째는 본인이 그 접촉에서 이해당사자라야 한다. 예를 들어 목격자나 증인의 입장에서 경찰 및 사법부와 접촉

한 경우는 제외된다. 지난 12개월 동안에 이해당사자로서 경찰 및 사법부와 직접 접촉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접촉의 빈도, 유형 등을 탐문하였다. 경찰과의 접촉과 사법부와의 접촉은 별개의 항목으로 분리하여 탐문하였다. 또한 응답자가 먼저 접촉을 시도한 경우와, 경찰 및 사법부가 먼저 접촉을 시도한 경우가 각각 분리되어 질문되었다.

(8) 경찰과 사법부에 대한 전반적 평가

경찰과 사법부에 대한 전반적 평가는 공정성, 신뢰성, 권위인정으로 구성된다. 공정성은 다시 경찰과 사법부가 문제나 사건을 다루는 절차에서의 공정성과 결과의 공정성으로 나뉘어 응답자의 인식정도를 측정되었다. 응답자는 절차의 공정성과 결과의 공정성에 대하여 각각 객관적인 판단을 한 후, 그들에 대하여 다시 주관적인 만족도를 표하였다. 신뢰성은 세부적으로 친절, 배려, 성의, 정직성, 적절성에 대한 응답자의 판단에 의해 측정되었다. 권위인정은 경찰 및 사법부에 대한 기대, 그들의 문제해결능력과 효율성에 대한 평가, 존경심, 그들에 대한 일반적 태도에 의해 측정되었다.

경찰과 사법부에 대한 전반적 평가는 일종의 태도측정이라고 사료되며, 그 세부내용들(공정성, 신뢰성, 권위인정)이 개념적으로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믿어진다. 따라서 이 전반적 평가항목들도 앞서 규범의 측정과 마찬가지로 심리측정이론에 기초한 소척도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소척도는 예비연구를 통하여 개발되었으며, 공정성, 신뢰성, 권위인정의 세 가지 잠재요인을 가지도록 제작되었다.

결 과

1. 표본의 직업분포와 교육분포

표본의 직업분포를 지역별로 산출한 것이 <표 2>에 제시되었다. 지역에 따라 직업분포가 상이한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카이자승검증을 한 결과 두

표 2. 지역별 직업분포

지 역	직 업							전체
	봉급자	전문자영	사(상)업	주부	학생	일용노무	기타	
청 주	65	9	28	47	38	1	9	197
서 울	84	15	20	31	32	2	10	194
전 체	149	24	48	78	70	3	19	391

숫자는 빈도를 의미한다. 서울지역에서 6명이 직업을 밝히지 않았다.

표 3. 지역별 교육분포

지역	교 육 수 준					전체
	고졸 이하	고졸	대학생	대졸	대졸 이상	
청주	18	69	35	67	8	197
서울	32	56	31	58	12	189
전체	50	125	66	125	20	386

숫자는 빈도를 의미한다. 서울지역에서 11명이 교육수준을 밝히지 않았다.

지역에서 직업분포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6)=9.42$, n.s.).

표본의 교육분포를 지역별로 산출한 것이 <표 3>에 제시하였다. 지역에 따라 교육분포가 상이한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카이사승검증을 한 결과 두 지역에서 교육분포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4)=6.80$, n.s.).

서울과 청주지역에서 표집된 응답자들이 직업분포와 교육분포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가 규명하고자 하는 가치관이나 준범규범 등이 직업과 교육수준에 의해 영향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때, 이 두 표본이 직업분포와 교육분포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므로 다른 측정변인에서도 지역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후의 분석에서는 지역을 무시하기 위하여 지역변인을 제외하였다.

2. 개별 조사문항의 전반적 기술통계

각 조사문항의 전반적 기술통계가 <표 4>부터 <표 18>까지 제시되었다. 이 전반적 통계들은 자료의 전체적 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자료이고, 보다 세밀한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가 되

며, 분석결과의 해석을 위한 지침이 된다.

(1) 경찰에 대한 경험.

경찰에 대한 경험은 4문항으로 조사되었는데, 응답자는 각 문항에 대하여 경험횟수를 응답하였다. 각 문항에 응답한 경험횟수의 전체 응답자 평균과 표준편차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모든 문항의 표준편차가 평균보다 크므로 경찰과 접촉한 경험횟수는 정적으로(positively) 편포된 분포를 가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과 접촉한 경험은 유형별로 나누어볼 때, 평균적으로 1번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위반사실이 없지만 불심검문 등을 받은 경험이 평균적으로 1번 이상(1.28회)인 것으로 집계되었지만, 표준편차(4.85)가 상대적으로 크므로 한두 명의 응답자가 많은 경험을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시민들이 경찰과 접촉하는 경우에, 경찰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평균 0.37회) 혹은 경찰의 대민업무를 위하여(평균 0.44회) 먼저 능동적으로 접촉하는 경우보다는, 검문(평균 1.28회)이나 단속(평균 0.58회)에 의하여 수동적으로 접촉하는 경우가 다소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어떤 형태로든 지난 한해동안 경찰과 접촉한 총 횟수는 일인당 평균 2.66회(표준편차 6.14)였다($N=394$). 따라서 대다수(최소한 50%이상)의 시민들이 일년에 3번 이하로 경찰과 어떤 형태로든 접촉한다고 볼 수 있다.

(2) 사법부에 대한 경험

사법부에 대한 경험은 5문항으로 조사되었는데, 경찰에 대한 경험과 마찬가지로 응답자는 각 문항에 대하여 경험횟수를 응답하였다. 각 문항에 응

표 4. 경찰에 대한 경험횟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문	항	응답자수	평 균	표준편차
지난 한해 동안 범죄나 사회부조리를 신고하거나, 청원 혹은 탄원을 하거나, 혹은 도움을 받기 위하여 귀하가 먼저 경찰과 접촉한 사실이 있습니까?		397	0.37	1.03
다른 이유로 인하여 지난 한해 동안 경찰의 대민업무 부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397	0.44	1.28
지난 한해 동안 거리 혹은 차안에서 경찰에 의해 위반이 적발되거나, 위반사실이 없지만 경찰의 협조요청, 불심검문 혹은 수색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396	1.26	4.85
지난 한해 동안 거리 혹은 차안에서 경찰에 의해 위반이 적발되거나, 단속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395	0.58	1.06

표 5. 사법부에 대한 경험횟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문	항	응답자수	평 균	표준편차
지난 한해 동안 청원 혹은 탄원을 하거나, 혹은 도움을 받기 위하여 귀하가 먼저 법원이나 검찰과 접촉한 사실이 있습니까?		396	0.16	0.75
다른 이유로 인하여 지난 한해 동안 법원의 대민업무 부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397	0.36	1.78
지난 한해 동안 피고 혹은 원고의 입장에서 법정에 출두한 적이 있습니까?		397	0.10	0.60
지난 한해 동안 증인 혹은 참고인의 입장에서 법정에 소환되어 출두한 적이 있습니까?		397	0.05	0.30
지난 한해 동안 증인 혹은 참고인의 입장에서 법정이 아닌 법관의 사무실이 나 법원에 출두한 적이 있습니까?		397	0.12	0.76

답한 경험횟수의 전체 응답자 평균과 표준편차는 위의 <표 5>와 같다.

경찰과 접촉한 경험횟수와 마찬가지로 모든 문항의 표준편차가 평균보다 크므로 사법부와 접촉한 경험횟수는 정적으로(positively) 편포된 분포를 가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사법부와 접촉한 경험은 유형별로 나누어 볼 때, 평균적으로 1번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떤 형태로든 지난 한해 동안 사법부와 접촉한 총횟수도 일인당 평균 이 1번이 채 되지 않는 0.79회(표준편차 3.13)였다(N=396). 따라서 대다수(최소한 50%이상)의 시민들이 일년에 1번 이하로 어떤 형태로든 사법부와 접촉하는 것으로 보인다.

(3) 경찰에 대한 전반적 평가

경찰에 대한 전반적 평가는 8개의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응답자는 이 문항들에 대해 4점 Likert 척도에 응답하였는데, 0은 가장 부정적인 견해를 의미하고, 3은 가장 긍정적인 견해를 의미하도록

수치화되었다. 이 문항들에 대한 평균적 반응은 <표 6>과 같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이 1.5 정도이면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은 중립적인 견해라고 사료되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경찰에 대한 전반적 평가는 대체로 중립적이라고 믿어진다. 다시 말해서 경찰에 대하여 긍정적인 견해를 가진 응답자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응답자가 고루 분포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평균의 크기와 표준편차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경찰에 대한 전반적 견해가 다소 부정적인 방향에 편중(미약한 정적 편포)되어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정규분포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8개의 문항에 대한 응답을 모두 합한 총점을 보아도 동일한 결론이 도출된다. 총점은 최소 0, 최고 24점의 범위를 가지고, 12점이 가장 중립적인 견해를 의미한다. 전체 응답자(N=390)의 총점 평균은 9.92이고, 표준편차는 4.33였다. 따라서 경

표 6. 경찰에 대한 전반적 평가문항의 평균과 표준편차

문	항	응답자수	평	준	표준편차
전반적으로 볼 때 경찰이 치안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397	1.40		0.75
전체적으로 볼 때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로서 어려운 사람의 권익과 편의를 존중한다고 생각합니까?		395	1.05		0.74
경찰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396	1.20		0.75
경찰이 시민들 사이의 분쟁을 중재하는 경우 공정하게 한다고 생각합니까?		395	1.14		0.76
경찰이 단속에 걸린 사람을 합법적으로 공정하게 처리한다고 생각합니까?		396	1.13		0.76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경찰의 덕을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396	1.63		0.70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성실하고 진지하게 반응한다고 생각합니까?		396	1.19		0.77
현재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의 자질과 능력은 충분히 인정할만 하다고 생각합니까?		396	1.20		0.69

표 7. 경찰에 대한 태도문항에 대한 응답분포

문	항	반대	찬성	전체
나는 경찰의 권위를 존중한다.		151	245	396
경찰들은 대체로 정직하고 순수하다.		270	127	397
나는 우리의 경찰이 자랑스롭다.		292	104	396
나는 경찰에 언제나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다.		120	277	397
경찰은 충분한 증거가 확보될 때까지 신변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금 등의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다.		264	132	396
경찰은 거리에서 누구든 불심검문할 권한이 있다.		242	153	395

숫자는 빈도를 의미한다.

찰에 대한 응답자들의 전반적 평가는 대체적으로 중립적인데, 약간 부정적인 견해가 우세하다고 사료된다.

이 8개의 문항들이 경찰에 대한 전반적 평가문항들으로써 서로 일관된 것들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Cronbach- α 을 산출해본 결과 0.88이 산출되었다. 이 수치는 문항수가 작다는 것을 고려하면 매우 높은 수치이다. 따라서 이 8개의 문항들의 합에 의해 측정되는 전반적 평가는 매우 신뢰로운 측정치이다.

(4) 경찰에 대한 태도

경찰에 대한 태도는 6개의 이분문항들로 측정되었다. 응답자들은 이 문항들에 찬성하는지, 아니면 반대하는지를 표하였고 그 응답분포가 <표 7>에 제시되었다.

경찰에 대한 태도문항들에 대한 응답분포는 매우 흥미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첫째로 응답자들의 대다수는 경찰의 권위를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하였다(첫 번째와 네 번째 문항). 그러나 경찰의 정직성과 신뢰성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회의적이었다(두 번째와 세 번째 문항). 이것은 경찰이 시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한다면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로 시민들의 신변에 관한 경찰력의 행사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문항).

이 6개의 문항들이 경찰에 대한 태도문항들으로써 서로 일관된 것들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Cronbach- α 을 산출해본 결과 0.66이 산출되었다. 이 수치는

문항수가 작다는 것, 그리고 각 문항이 이분문항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수치가 가는 수치이지만, 태도척도가 갖추어야 할 충분한 신뢰도 수준에 다소 모자라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 이유를 파악하기 위하여 문항 - 총점 상관계수와 요인분석을 수행한 결과, 시민들의 신변에 관한 마지막 두 문항이 앞의 4문항과 속성이 달라서 일관되지 않는다는 것이 파악되었다. 따라서 경찰에 대한 태도를 집약하기 위한 점수는 앞의 4문항의 합으로 산출하기로 하였다. 이 4문항의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는 Cronbach- α 은 6개 문항의 그것보다 다소 높은 0.70이었다.

네 문항의 합은 최소 0, 최고 4점의 범위를 가지고, 숫자가 클수록 경찰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낸다. 전체 응답자(N=397)로부터 산출한 4문항 합의 평균은 1.90이고 표준편차는 1.34였다.

(5) 사법부에 대한 전반적 평가

사법부에 대한 전반적 평가는 8개의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응답자는 이 문항들에 대해 4점 Likert척도에 응답하였는데, 0은 가장 부정적인 견해를 의미하고, 3은 가장 긍정적인 견해를 의미하도록 수치화되었다. 이 문항들에 대한 평균적 반응은 <표 8>과 같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이 1.5 정도이면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은 중립적인 견해라고 사료

되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사법부에 대한 전반적 평가는 대체로 중립적이라고 믿어진다. 다시 말해서 사법부에 대하여 긍정적인 견해를 가진 응답자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응답자가 고루 분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평균의 크기와 표준편차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사법부에 대한 전반적 견해가 대체적으로 정규분포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8개의 문항에 대한 응답을 모두 합한 총점을 보아도 동일한 결론이 도출된다. 총점은 최소 0, 최고 24점의 범위를 가지고, 12점이 가장 중립적인 견해를 의미한다. 전체 응답자(N=386)의 총점 평균은 11.58이고, 표준편차는 4.20였다. 따라서 사법부에 대한 응답자들의 전반적 평가는 대체적으로 중립적이라고 사료된다.

이 8개의 문항들이 사법부에 대한 전반적 평가 문항들로써 서로 일관된 것들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Cronbach- α 을 산출해본 결과 0.89가 산출되었다. 이 수치는 문항수가 작다는 것을 고려하면 매우 높은 수치이다. 따라서 이 8개의 문항들의 합에 의해 측정되는 전반적 평가는 매우 신뢰로운 측정치이다.

(6) 사법부에 대한 태도

사법부에 대한 태도는 6개의 이분문항들로 측정되었다. 응답자들은 이 문항들에 찬성하는지, 아니

표 8. 사법부에 대한 전반적 평가문항의 평균과 표준편차

문항	응답자수	평균	표준편차
전반적으로 볼 때 사법부는 진정으로 법치사회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396	1.37	0.64
전체적으로 볼 때 사법부가 어려운 사람의 권익과 편의를 보호하려고 애쓰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396	1.42	0.63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습니까?	397	1.36	0.69
법원이 시민들 사이의 분쟁을 중재하는 경우 공정하게 한다고 생각합니까?	395	1.42	0.73
법원이 범법자를 합법적으로 공정하게 처리한다고 생각합니까?	395	1.37	0.73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사법부의 덕을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395	1.62	0.69
법원에 고소나 제소를 하는 경우 법원이 성실하고 진지하게 반응한다고 생각합니까?	394	1.36	0.74
현재 사법관의 자질과 능력은 충분히 인정할만 하다고 생각합니까?	390	1.63	0.72

표 9. 사법부에 대한 태도문항에 대한 응답분포

문	항	반대	찬성	전체
부당하게 5만원 정도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면 법정에 제소하겠다.		169	227	396
누군가에게 5만원 정도를 빌려주었는데 그 사람이 갚지 않는다면 법정에 제소하겠다.		367	30	97
이웃집의 아이가 우리집 대문에 계속 낙서를 하는데도 그 아이의 부모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 부모를 상대로 법정에 제소하겠다.		349	48	397
국민의 기본권이 법정에서 잘 보호되고 있는 편이다.		225	167	392
사법관들은 정직하고 정의롭다.		257	136	393
법원의 판결은 대체로 공정하다.		188	208	396

숫자는 빈도를 의미한다.

면 반대하는지를 표하였고, 그 응답분포가 <표 9>에 제시되었다.

사법부에 대한 태도문항들에 대한 응답분포는 매우 흥미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첫째로, 응답자들의 절대 대다수는 비교적 사소한 일을 위하여 같은 시민을 대상으로 법원의 중재를 요청하는 것에 반대한다(두 번째와 세 번째 문항). 그러나 비슷한 정도로 사소하더라도 상대가 정부인 경우에는 법원에 제소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첫 번째 문항). 둘째로, 대다수의 응답자들은 사법관의 정직성과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배려에 대하여 회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고(네 번째와 다섯 번째 문항), 판결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양분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여섯 번째 문항).

이 6개의 문항들이 사법부에 대한 태도문항들로써 서로 일관된 것들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Cronbach- α 을 산출해본 결과 0.51이 산출되었다. 이 수치는 문항수가 작다는 것, 그리고 각 문항이 이 분문항이라는 사실을 고려하여도, 태도척도가 갖추어야 할 충분한 신뢰도 수준에 훨씬 모자라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 이유를 파악하기 위하여 문항-총점 상관계수와 요인분석을 수행한 결과, 제소의지에 관한 처음 세 문항이 뒤의 3문항과 속성이 달라서 일관되지 않는다는 것이 파악되었다. 따라서 사법부에 대한 태도를 집약하기 위한 점수는 뒤의 3문항의 합으로 산출하기로 하였다. 이 3

문항의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는 Cronbach- α 은 6개 문항의 그것보다 훨씬 높은 0.78이었다.

세 문항의 합은 최소 0, 최고 3점의 범위를 가지고, 숫자가 클수록 사법부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낸다. 전체 응답자(N=388)로부터 산출한 3문항 합의 평균은 1.30이고 표준편차는 1.22였다.

(7) 처벌확률추정

처벌확률의 추정은 15개의 탈법행위 각각에 대하여 측정되었다. 응답자들은 각각의 탈법행위를 10명이 한다면 그중 몇 명이 처벌받게 될 것인지를 추정하였다. 전체 응답자가 추정한 처벌자의 평균숫자와 표준편차는 <표 10>과 같다.

처벌확률이 가장 높게 추정된 탈법행위는 마약(6.08), 주거침입(5.09), 사기(5.02)였고, 가장 낮게 추정된 탈법행위는 쓰레기 투기(2.51), 횡단위반(2.95), 신호위반(2.88)이었다. 일반적으로 심각한 범죄의 처벌확률은 높게 추정된 반면, 사소한 범죄의 처벌확률은 낮게 추정되었다.

탈법행위에 대한 처벌확률추정의 표준편차가 일반적으로 큰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주거침입의 경우, 추정치의 가능 최소값(0)과 가능 최대값(10)이 평균(5.09)을 중심으로 2개의 표준편차내에 포함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응답자들의 처벌추정이 서로 매우 다양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동일한 탈법행위에 대하여 어떤 응답자는 처벌확률을 낮게 추정한 반면, 다른 응답자는 높게 추정

표 10. 처벌확률추정의 평균과 표준편차

문	항	응답자수	평	표준편차
	이웃사람에게 폐가 될 정도의 고성방가 혹은 소란행위	396	3.05	2.88
	길가나 금지된 장소에서 휴지 등의 쓰레기 버리기	396	2.51	2.85
	음주(백주 1컵 이상)한 후 운전하기	396	4.29	3.21
	규정속도보다 빨리 운전하기(20km/hr 이상 초과)	395	3.68	3.01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길 건너기	395	2.95	3.03
	횡단보도에서 신호등을 무시하고 길 건너기	395	2.88	2.94
	상점 등에서 사소한 물건을 슬쩍 가져나오기	395	4.05	3.25
	주차금지 장소나 다른 사람의 주차장소에 주차하기	396	3.79	2.97
	소득액을 줄여서 신고하기	396	3.52	3.16
	미성년(만 20세 미만)인 이성과의 육체적 접촉	396	3.18	3.22
	노상에서 폭력을 사용하여 싸움하기	396	4.71	3.07
	다른 사람의 주거지를 몰래 침입하기	396	5.09	3.31
	100만원 정도의 규모로 도박하기	396	4.24	3.53
	대마초와 히로뽕 등의 범정마약을 섭취하기	396	6.08	3.54
	100만원 정도의 규모로 사기치기	396	5.02	3.47

하는 경향이 심하다는 것이다.

15개의 탈법행위에 대한 처벌추정의 합은 본 연구에서 고려된 범법행위 일반에 대한 처벌추정으로 간주될 수 있다. 전체 응답자(N=395)로부터 산출된 처벌추정합의 평균은 58.97이었고, 표준편차는 34.33이었다. 따라서 응답자들은 본 조사에서 고려된 탈법행위를 하는 경우 종류를 불문하고 처벌받을 확률이 평균적으로 $58.97/150=0.39$ 인 것으로 추정하였다. 다시 말해서 탈법자의 1/3이 약간 넘는 숫자가 처벌될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처벌확률추정의 합을 분석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각 탈법행위에 대한 처벌추정이 서로 일관된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15개 추정치들의 Cronbach- α 를 산출해본 결과 매우 높은 0.93이 산출되었다. 이 높은 수치가 의미하는 바는 어떤 탈법행위에 대하여 처벌확률을 높게 추정한 응답자는 다른 탈법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확률을 높게 추정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는 것이다. 이 결과는 처벌확률이 각 탈법행위의 특성이나 심각성뿐만 아니라, 응답자의 성향이나 판단기준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처벌확률추정을 하나의 인성변인으로 간주하여 모

든 탈법행위에 대한 처벌확률추정의 합을 그 인성변인에 대한 지표로 삼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믿어진다.

(8) 처벌효과추정

처벌효과추정은 두 가지 방식에 의하여 측정되었다. 첫째는 앞서 처벌확률추정에 이용되었던 탈법행위들에 대하여 만약 응답자가 처벌받는다면 그 처벌이 얼마나 개인적인 불명예 혹은 체면손실이 될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개인적 처벌효과). 이 측정치들은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하여 고안되었다. 하나는 처벌효과를 지표화하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각 탈법행위의 주관적 심각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여기에서 파악된 탈법행위의 주관적 심각성은 범법성을 지표화하기 위한 가중치(weight)로 사용될 예정이다. 각 탈법행위에 대한 개인적 처벌효과의 추정은 3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는데, 0은 전혀 개인적인 불명예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고, 2는 매우 불명예스럽다는 것을 의미한다.

처벌효과추정을 측정한 두 번째 방식은 사회적 고립과 문제에 대한 인식을 탐문한 것이다(사회적 처벌효과). 사회적인 고립에 대한 인식도 각

표 11. 각 탈법행위에 대한 개인적 처벌효과의 응답분포

문	항	응답자수	평 균	표준편차
이웃사람에게 폐가 될 정도의 고성방가 혹은 소란행위		397	1.33	0.56
길가나 금지된 장소에서 휴지 등의 쓰레기 버리기		396	1.11	0.63
음주(맥주 1컵 이상)한 후 운전하기		396	1.27	0.64
규정속도보다 빨리 운전하기(20km/hr 이상 초과)		397	1.00	0.62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길 건너기		397	0.98	0.63
횡단보도에서 신호등을 무시하고 길 건너기		396	1.13	0.67
상점 등에서 사소한 물건을 슬쩍 가져나오기		396	1.75	0.53
주차금지 장소나 다른 사람의 주차장소에 주차하기		396	0.98	0.58
소득액수를 줄여서 신고하기		397	1.27	0.65
미성년(만 20세 미만)인 이성과의 육체적 접촉		395	1.63	0.63
노상에서 폭력을 사용하여 싸움하기		397	1.59	0.58
다른 사람의 주거지를 몰래 침입하기		397	1.77	0.54
100만원 정도의 규모로 도박하기		396	1.58	0.64
대마초와 히로뽕 등의 법정마약을 섭취하기		397	1.82	0.53
100만원 정도의 규모로 사기치기		396	1.77	0.52

표 12. 사회적 처벌효과의 응답분포

문	항	응답자수	평 균	표준편차
내가 만약 법을 어긴다면 가족들이 나에게 실망할 것이다.		397	1.66	0.52
내가 만약 법을 어긴다면 친구들로부터 고립될 것이다.		397	1.24	0.67
내가 만약 법을 어긴다면 직장생활에 지장을 줄 것이다.		396	1.53	0.60
내가 만약 처벌을 받으면 가족들이 나에게 실망할 것이다.		396	1.72	0.51
내가 만약 처벌을 받으면 친구들로부터 고립될 것이다.		396	1.27	0.67
내가 만약 처벌을 받으면 직장생활에 지장을 줄 것이다.		355	1.62	0.56

탈법행위에 대한 개인적 처벌효과의 추정과 마찬가지로 3점 Likert척도로 측정되었는데, 0은 전혀 문제시될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2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것임을 의미한다. 우선 각 탈법행위에 대한 개인적 처벌효과의 추정이 <표 11>에 요약되어있고, 사회적인 고립과 문제에 대한 인식은 <표 12>에 요약되어있다.

처벌받는 것이 가장 심각한 개인적 불명예가 될 것으로 추정된 탈법행위는 마약(평균 1.82), 주거 침입(평균 1.77), 사기(평균 1.77), 절도(평균 1.75)였고, 가장 불명예스럽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 탈법행위는 불법주차(평균 0.98), 무단횡단(평균 0.98), 과속운전(평균 1.00)이었다.

15개의 탈법행위에 대한 개인적 처벌효과추정의 합은 본 연구에서 고려된 범법행위 일반에 대한

처벌효과추정으로 간주될 수 있다. 전체 응답자(N=388)로부터 산출된 처벌효과추정합의 평균은 21.04이었고, 표준편차는 5.64이었다. 이 합산점수는 최소 0, 최고 30의 범위를 가지고, 점수가 높을수록 처벌의 개인적 효과를 심각한 것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처벌효과추정의 합을 분석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각 탈법행위에 대한 처벌효과추정이 서로 일관된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15개 추정치들의 Cronbach- α 를 산출해본 결과 매우 높은 0.90가 산출되었다. 이 높은 수치가 의미하는 바는 어떤 탈법행위에 대하여 개인적 처벌효과를 높게 추정한 응답자는 다른 탈법행위에 대해서도 개인적 처벌효과를 높게 추정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는 것이다. 이 결과는 처벌의 개인적 효과가

각 탈법행위의 특성이나 심각성뿐만 아니라, 응답자의 성향이나 판단기준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인적 처벌효과와 추정을 하나의 인성변인으로 간주하여 모든 탈법행위에 대한 개인적 처벌효과추정의 합을 그 인성변인에 대한 지표로 삼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믿어진다.

법을 어기거나 처벌을 받는 경우 가장 우려되는 것은 가족들의 실망(평균 1.66과 1.72)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을 어기는 것 자체보다 처벌받는 것이 약간 더 심각한 것으로 응답되었으나, 그 차이가 매우 미약한 정도에 그치고 있다(가족의 실망은 1.66과 1.72, 친구들로부터의 고립은 1.24와 1.27, 직장생활의 지장은 1.53과 1.62). 이 결과는 사람들이 처벌의 두려움 때문에 준법하는 것은 아니라는 기존연구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조사의 응답자들은 법을 어긴다는 것 자체가 처벌받는 것에 못지 않게 주위사람들과 직장에 있어서는 안될 일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6개 문항의 합은 사회적 고립에 대한 인식으로 간주될 수 있다. 전체 응답자($N=353$)로부터 산출된 합의 평균은 9.03이었고, 표준편차는 2.64이었다. 이 합산점수는 최소 0, 최고 12의 범위를 가지고,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고립을 심각한 것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항의 합을 분석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각 문항들이 서로 일관된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6개 추정치들의 Cronbach- α 를 산출해본 결과 매우 높은 0.85가 산출되었다. 이 높은 수치가 의미하는 바는 어떤 사회적 고립의 심각성을 높게 추정한 응답자는 다른 사회적 고립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처벌효과를 높게 추정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는 것이다. 이 결과는 사회적 고립효과가 각 사회적 맥락(가족, 친구, 직장)의 특수성뿐만 아니라, 응답자의 성향이나 판단기준에 의

해서도 크게 영향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적 고립효과를 하나의 인성변인으로 간주하여 모든 사회적 맥락에서의 고립효과와 합을 그 인성변인에 대한 지표로 삼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믿어진다.

(9) 준법에 대한 친인척의 의견

준법에 대한 친인척의 의견은 15개의 각 탈법행위를 응답자가 범하는 경우에 가까운 친인척으로부터 비난받을 가능성의 정도로 측정되었다. 이를 위하여 응답자는 우선 자신의 생활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인물을 선정하고, 각 탈법행위를 그 인물이 비난할 정도를 최소 0, 최고 2를 가지는 3점 Likert척도에 표하였다. 숫자가 클수록 비난의 정도가 큰 것을 의미한다. 응답자들이 선정한 중요한 타인으로는 배우자(145)와 부모(129)가 가장 많이 선택되었다. 반면에 조부모(3)는 가장 적게 선택되었다. 각 탈법행위에 대한 비난정도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표 13>에 제시되었다.

중요한 타인이 가장 심하게 비난할 것으로 판단된 탈법행위는 사기(평균 1.89), 마약(평균 1.89), 주거침입(평균 1.85), 절도(평균 1.83), 미성년과의 성관계(평균 1.82), 도박(평균 1.81)이었고, 가장 약하게 비난할 것으로 판단된 탈법행위는 무단주차(평균 1.04), 쓰레기 투기(평균 1.10), 무단횡단(평균 1.11)이었다.

중요한 타인의 비난가능성에 관한 15개 문항의 합은 종류를 불문하고 탈법행위를 하는 경우 가까운 친인척으로부터의 비난에 관한 전반적 추정치로 간주될 수 있다. 전체 응답자($N=391$)로부터 산출된 합의 평균은 22.71이었고, 표준편차는 5.62이었다. 이 합산점수는 최소 0, 최고 30의 범위를 가지고, 점수가 높을수록 비난가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문항의 합을 분석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각 문항들이 서로 일관된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15개 추정치들의 Cronbach- α 를 산출

표 13. 각 탈법행위에 대한 중요한 타인의 비난가능성의 응답분포

문	항	응답자수	평 균	표준편차
	이웃사람에게 폐가 될 정도의 고성방가 혹은 소란행위	397	1.41	0.58
	길가나 금지된 장소에서 휴지 등의 쓰레기 버리기	397	1.10	0.65
	음주(맥주 1컵 이상)한 후 운전하기	396	1.46	0.66
	규정속도보다 빨리 운전하기(20km/hr 이상 초과)	397	1.21	0.65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길 건너기	396	1.11	0.68
	횡단보도에서 신호등을 무시하고 길 건너기	396	1.22	0.70
	상점 등에서 사소한 물건을 슬쩍 가져나오기	396	1.83	0.47
	주차금지 장소나 다른 사람의 주차장소에 주차하기	396	1.04	0.63
	소득액을 줄여서 신고하기	397	1.24	0.65
	미성년(만 20세 미만)인 이성과의 육체적 접촉	397	1.82	0.48
	노상에서 폭력을 사용하여 싸움하기	396	1.76	0.49
	다른 사람의 주거지를 몰래 침입하기	396	1.85	0.44
	100만원 정도의 규모로 도박하기	396	1.81	0.49
	대마초와 히로뽕 등의 법정마약을 섭취하기	396	1.89	0.41
	100만원 정도의 규모로 사기치기	396	1.89	0.40

표 14. 준법에 관한 도덕관념과 규범헌함에 대한 응답분포

문	항	반대	찬성	전체
	비록 어떤 법규가 불합리할지라도 그 법규는 존재하는 한 지켜져야 한다.	159	237	396
	탈법이나 불법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92	304	396
	사소할지라도 탈법을 하는 사람은 인격파탄자이다.	260	137	397
	사리에 맞지않는 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248	149	397
	발각되지 않는다면 약간의 탈법 혹은 불법을 해도 무방하다.	323	74	397
	판사가 오판을 하는 경우에도 그 판결은 준수되어야 한다.	338	59	397
	비록 합법일지라도 경찰이 제지하는 경우에는 순종하여야 한다.	246	149	395
	내게 도움이 된다면 법을 어겨도 괜찮다.	361	33	394
	법을 지키는 것이 손해일 때는 법을 어겨도 좋다.	325	71	396
	사회가 원활히 돌아가기 위해서는 법을 위반할 수 있다.	274	121	395

숫자는 빈도를 의미한다.

해본 결과 매우 높은 0.92가 산출되었다. 이 높은 수치가 의미하는 바는 어떤 탈법행위에 대하여 중요한 타인의 비난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한 응답자는 다른 탈법행위에 대해서도 중요한 타인의 비난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중요한 타인의 비난가능성이 탈법행위의 종류뿐만 아니라, 응답자의 성향이나 판단기준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요한 타인의 비난가능성 추정을 하나의 인성변인으로 간주하여 모든 탈법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 추정치의 합을 그 인성 변인에

대한 지표로 삼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믿어진다.

(10) 준법에 대한 도덕관념과 규범

준법에 관한 도덕관념과 규범은 10개의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응답자는 이 문항들에 대하여 “찬성” 혹은 “반대”를 표하였다. 이 문항들에 대한 응답의 빈도분포는 <표 14>와 같다.

일반적으로 본 조사의 응답자들은 준법에 관하여 보수적인 가치관과 규범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불합리한 법규도 존재하는 한 지켜져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서 대다수의 응답

자(237)가 찬성하였다. 그러나 판사의 판결과 경찰의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는 예외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즉, 판사의 오판에 대해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았고(338), 경찰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도 저항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246). 이 현상은 판사의 판결과 경찰의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일반 시민들이 법적 권위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법”의 개념에 판사의 판결과 경찰의 권력행사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문항의 합을 분석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각 문항들이 서로 일관된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10개 문항들의 Cronbach- α 을 산출해본 결과 다소 낮은 0.59가 산출되었다. 낮은 일관성 지수가 산출된 이유를 규명하기 위하여 문항-전체 상관계수와 요인분석을 수행한 결과, 6번째 문항(“판사가 오판을 하는 경우에도 그 판결은 준수되어야 한다”)과 7번째 문항(“비록 합법적일지라도 경찰이 제지하는 경우에는 순종하여야 한다”)이 다른 문항들과 심리측정적 속성이 다른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준법에 대한 도덕관념과 규범을 하나의 수치로 계량화하기 위하여 그 문항들을 제외하였다.

나머지 8개 문항들로 산출된 Cronbach- α 은 0.63이었다. 이 8개 문항들은 높은 숫자가 준법에 대한 보수적인 견해를 의미하도록 계량화된 후 합산되었다. 이 합산점수는 최소 0, 최고 8점의 범위를 가지고, 숫자가 클수록 보수적인 준법가치관을 의미한다. 전체 응답자($N=390$)들로부터 산출된 합산점수의 평균은 5.58이었고, 표준편차는 1.80였다. 이 합산점수가 추후의 분석에서 이용될 것이지만 신뢰도가 다소 낮으므로 이 합산점수를 이용한 분석의 해석에는 다소간의 조심성과 유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11) 법의 도덕성

법의 도덕성에 대한 판단은 15개의 각 탈법행위에 대한 현행 처벌규정의 적절성 판단에 의해 측정되었다. 이를 위하여 각 탈법행위에 대한 현행 처벌규정을 응답자에게 알려주고, 그 처벌이 관대한 것인지, 적절한 것인지, 아니면 엄격한 것인지를 판단하게 하였다. 전체 피험자들의 응답분포가 <표 15>에 제시되었다.

현행 처벌규정이 엄격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던 탈법행위는 절도(151), 무단주차(118), 무단횡단(104)였고, 관대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던 탈법행위는 탈세(192), 고성방가(147), 마약(164)이었다. 일반적으로는 현행 처벌규정들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수가 가장 많았으나, 특히 탈세, 미성년자와의 육체적 관계, 그리고 마약사용에 대해서는 현행 처벌규정이 너무 관대하다고 대답한 응답자의 수가 적절하다고 응답한 수보다 더 많았다. 이것은 범법행위의 심각성이 높다고 판단될수록 일반 시민들이 보다 보수적인 견해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법의 도덕성에 관한 15개 문항의 합은 종류를 불문하고 본 조사에서 고려된 탈법행위에 관한 법 전반의 도덕성 판단으로 간주될 수 있다. 전체 응답자($N=383$)로부터 산출된 합의 평균은 14.20이었고, 표준편차는 6.19이었다. 이 합산점수는 최소 0, 최고 30의 범위를 가지고, 점수가 높을수록 엄격하다고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평균점수로 미루어 본 조사의 응답자들은 여기에서 고려된 탈법행위에 관한 현행 법규정을 대체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그러나 표준편차가 다소 큰 것으로 미루어 이 판단에는 심한 개인차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문항의 합을 분석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각 문항들이 서로 일관된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15개 추정치들의 Cronbach- α 을 산출해본 결과 매우 높은 0.88이 산출되었다. 이 높은

표 15. 법의 도덕성 문항에 대한 응답분포

문	항	관대	적절	엄격	전체
이웃사람에게 폐가 될 정도의 고성방가 혹은 소란행위: 현행 처벌규정: 벌금 3만원		147	215	34	396
음주(맥주 1컵 이상)한 후 운전하기: 현행 처벌규정: 최소 면허정지 100일, 최고 면허 취소와 벌금 100만원		106	223	68	397
길가나 금지된 장소에서 휴지 등의 쓰레기 버리기: 현행 처벌규정: 벌금 2만 5천원		84	204	109	397
규정속도보다 빨리 운전하기(20km/hr 이상 초과): 현행 처벌규정: 벌금 6만원		101	194	101	396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길 건너기: 현행 처벌규정: 벌금 3만원		61	231	104	396
횡단보도에서 신호등을 무시하고 길 건너기: 현행 처벌규정: 벌금 3만원		94	216	85	395
상점 등에서 사소한 물건을 슬쩍 가져나가기: 현행 처벌규정: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		51	195	151	397
주차금지 장소나 다른 사람의 주차장소에 주차하기: 현행 처벌규정: 벌금 4만원		54	222	118	394
소득액을 줄여서 신고하기: 현행 처벌규정: 신고에 누락된 금액의 10%		192	166	38	396
미성년(만 20세 미만)인 이성과의 육체적 접촉: 현행 처벌규정: 5년 이하의 징역		166	143	88	397
노상에서 폭력을 사용하여 싸움하기: 현행 처벌규정: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69	227	100	396
다른 사람의 주거지를 몰래 침입하기: 현행 처벌규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114	215	68	397
100만원 정도의 규모로 도박하기: 현행 처벌규정: 5백만원 이하의 벌금		124	193	80	397
대마초와 히로뽕 등의 범정마약을 섭취하기: 현행 처벌규정: 5년 이하의 징역		164	161	66	391
100만원 정도의 규모로 사기치기: 현행 처벌규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78	224	89	391

숫자는 빈도를 의미한다.

수치가 의미하는 바는 어떤 탈법행위의 법규정이 엄격한 것으로 판단한 응답자는 다른 탈법행위의 법규정에 대해서도 엄격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법의 도덕성이 탈법행위의 종류뿐만 아니라, 응답자의 성향이나 판단기준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받는다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법의 도덕성 판단을 하나의 인성변인으로 간주하여 모든 탈법행위의 법규정에 대한 적절성 판단의 합을 그 인성변인에 대한 지표로 삼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믿어진다.

(12) 법의 형평성

법의 형평성은 역시 15개의 탈법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들에 대한 처벌이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배경에 상관없이 공평하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에 의해 측정되었다.

본 조사의 응답자들은 거의 대다수가 거의 모든 탈법행위에 대하여 법적용이 불형평하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탈세(334), 음주운전(293), 미성년과의 성관계(293), 과속운전(290) 등의 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불형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 단 하나의 예외가 발견되었는데, 주거침입의 경우에는 처벌이 불형평하다고 응답한 사람(197)과 형평하다고 응답한 사람(199)이 거의 동수로 나타났다.

15개의 탈법행위에 대한 형평성 판단의 합은 본 연구에서 고려된 범법행위 일반에 대한 법적용의 형평성 판단으로 간주될 수 있다. 전체 응답자(N=389)로부터 산출된 형평성 판단합의 평균은 5.17이었고, 표준편차는 4.49이었다. 이 합산점수는 최소 0, 최고 15점의 범위를 가지고, 숫자가 클수록 형평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응답자들은 본 조사에서 고려된 탈법행위에 대하여 법적용이 전반적으로 불형평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형평성 판단의 합을 분석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각 탈법행위에 대한 형평성 판단이 서로 일관된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15개 추정치들의 Cronbach- α 를 산출해본 결과 매우 높

표 16. 각 탈법행위에 대한 법의 형평성 판단의 응답분포

문	항	불형평	형 평	전 체
	이웃사람에게 폐가 될 정도의 고성방가 혹은 소란행위	279	118	397
	길가나 금지된 장소에서 휴지 등의 쓰레기 버리기	244	153	397
	음주(맥주 1컵 이상)한 후 운전하기	293	104	397
	규정속도보다 빨리 운전하기(20km/hr 이상 초과)	290	106	396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길 건너기	226	170	396
	횡단보도에서 신호등을 무시하고 길 건너기	221	176	397
	상점 등에서 사소한 물건을 슬쩍 가져나오기	220	197	397
	주차금지 장소나 다른 사람의 주차장소에 주차하기	227	119	396
	소득액을 줄여서 신고하기	334	62	396
	미성년(만 20세 미만)인 이성과의 육체적 접촉	293	103	396
	노상에서 폭력을 사용하여 싸움하기	262	134	396
	다른 사람의 주거지를 몰래 침입하기	197	199	396
	100만원 정도의 규모로 도박하기	286	111	397
	대마초와 히로뽕 등의 법정마약을 섭취하기	234	163	397
	100만원 정도의 규모로 사기치기	260	136	396

숫자는 빈도를 의미함

표 17. 각 탈법행위에 대한 경험회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문	항	응답자수	평 균	표준편차
	이웃사람에게 폐가 될 정도의 고성방가 혹은 소란행위	397	0.57	2.62
	길가나 금지된 장소에서 휴지 등의 쓰레기 버리기	390	6.71	22.43
	음주(맥주 1컵 이상)한 후 운전하기	395	1.70	7.76
	규정속도보다 빨리 운전하기(20km/hr 이상 초과)	381	5.31	18.24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길 건너기	377	9.72	19.68
	횡단보도에서 신호등을 무시하고 길 건너기	389	4.26	11.06
	상점 등에서 사소한 물건을 슬쩍 가져나오기	397	0.05	0.34
	주차금지 장소나 다른 사람의 주차장소에 주차하기	391	1.93	5.18
	소득액을 줄여서 신고하기	395	0.12	0.57
	미성년(만 20세 미만)인 이성과의 육체적 접촉	397	0.06	0.58
	노상에서 폭력을 사용하여 싸움하기	397	0.12	0.67
	다른 사람의 주거지를 몰래 침입하기	397	0.02	0.27
	100만원 정도의 규모로 도박하기	396	0.12	1.45
	대마초와 히로뽕 등의 법정마약을 섭취하기	397	0.01	0.15
	100만원 정도의 규모로 사기치기	397	0.01	0.15

숫자는 빈도를 의미함

은 0.90이 산출되었다. 이 높은 수치가 의미하는 바는 어떤 탈법행위에 대하여 형평성을 높게 추정한 응답자는 다른 탈법행위에 대해서도 형평성을 높게 추정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는 것이다. 이 결과는 형평성 판단이 각 탈법행위의 특성이나 심각성뿐만 아니라, 응답자의 성향이나 판단기준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

서 형평성 판단을 하나의 인성변인으로 간주하여 모든 탈법행위에 대한 형평성 판단의 합을 그 인성변인에 대한 지표로 삼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믿어진다.

(13) 범법경험

범법경험은 지난 1년간 15개의 범법행위 각각을 한 횟수에 의해 측정되었다. 각 범법행위에 대한

평균횟수와 표준편차는 <표 17>과 같다.

평균적으로 빈도가 가장 많았던 범법행위는 무단횡단(평균 9.72회), 쓰레기 투기(평균 6.71회), 과속운전(평균 5.31회)이었다. 각 범법행위를 한 횟수를 모두 합한 범법행위 총횟수는 평균이 29.78이었고, 표준편차가 45.94였다. 평균과 표준편차의 상대적 크기가 말해주듯이 이 범법행위의 총횟수는 극심하게 정적으로(positively) 편포되어 있다. 또한 15개 문항에 대한 원응답(raw response)으로 산출한 Cronbach- α 은 0.62였다.

각 범법행위의 횟수를 모두 합하여 그 총횟수로서 ‘범법성’의 지표를 삼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 첫째 이유는 모든 응답자가 동일한 척도기준에서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즉, 각 응답의 상하한가가 정해지지 않았다). 둘째 이유는 각 문항의 표준편차가 너무 상이해서 각 문항들의 실증적인(empirical) 척도단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셋째로, 각 범법행위가 가지는 심각성과 범죄성이 다를 것인데, 그들의 횟수를 단순합산하는 것은 그 심각성과 범죄성이 동일하다고 간주하는 것이므로 적절치 못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범법성’의 지표를 도출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수행하였다.

(1) 우선 각 문항이 동일한 척도단위를 가지게 하기 위하여 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각 문항의 응답을 표준화하였다. (2) 표준화된 각 문항과 앞서 요약된 바 있는 개인적 처벌효과추정의 상응하는 문항들을 서로 곱해주었다. 다시 말해서 개인적 처벌효과와 문항들에 대한 응답은 각 범법행위에 대한 주관적 심각성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것을 가중치(weight)로 이용하여 표준화된 범법횟수에 곱해준 것이다. (3) 표준화되고 가중된 15개 각각의 범법횟수를 합하여 ‘범법성’ 지표를 산출하였다.

표준화되고 가중된 15개의 범법횟수들의 내적 일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Cronbach- α 을 산출한 결과 0.75가 산출되었다. 이것은 원반응(raw response)으로 산출된 내적 일관성 지수 0.62보다 월등히 높은 것이다.

(14) 전반적 기술통계의 요약

지금까지 기술된 각 측정치의 전반적 기술통계를 요약하면 <표 18>과 같다. 경찰에 대한 경험횟수와 사법부에 대한 경험횟수는 추상적인 개념의 측정이 아니므로 내적 일관성 지수(α)을 산출하지 않았다.

각 측정치의 점수를 산출하기 위하여 해당 문항

표 18. 전반적 기술통계의 요약

변 인	응답자수	문 항 수	평 균	표준편차	α
경찰에 대한 경험횟수	394	4	2.66	6.14	-
사법부에 대한 경험횟수	396	5	0.79	3.13	0.88
경찰에 대한 전반적 평가	390	8	9.92	4.33	0.70
경찰에 대한 태도	396	4	1.90	1.34	-
사법부에 대한 전반적 평가	386	8	11.58	4.20	0.89
사법부에 대한 태도	388	3	1.30	1.22	0.78
처벌확률추정	395	15	58.97	34.33	0.93
개인적 처벌효과 추정	388	15	21.04	5.64	0.90
사회적 처벌효과 추정	353	6	9.03	2.64	0.85
친인척의 의견	391	15	22.71	5.62	0.92
준법에 대한 도덕관념과 규범	390	8	5.58	1.80	0.63
법의 도덕성 판단	383	15	14.20	6.19	0.88
법의 형평성 판단	389	15	5.17	4.49	0.90
범법성	363	15	-1.14	8.43	0.75

들에 대한 응답을 합산하는 과정에서 한 문항에서라도 무응답이 존재하는 응답자는 탈락되었기 때문에 각 측정치의 응답자수가 각기 다르다. 만약 같은 방식으로 무응답이 처리된다면 추후의 관계분석에서는 너무 많은 응답자의 탈락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추후의 관계분석에서 만약 너무 많은 탈락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무응답한 문항의 값을 응답한 문항들의 평균치로 대체하였다.

3. 범법성의 주성분 구조

범법성은 본 연구의 궁극적인 종속변인이다. 따라서 범법성과 다른 변인들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기에 앞서 범법성의 구조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범법성(범법경험)을 측정한 15개 문항에 대하여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하였다. '1 보다 큰 eigenvalue' 기준을 사용하여 4개의 주성분을 도출하고, varimax 방식을 이용하여 회전하였다. 그 결과가 <표 19>에 제시되었다.

성향이 비교적 뚜렷이 구별되는 4개의 주성분이

도출되었는데(이 4개의 주성분은 전체 변량의 66%를 설명한다), 첫 번째 주성분은 절도, 사기, 주거침입 등의 비교적 심각하고 파렴치한 범법행위를 대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첫 번째 주성분을 '파렴치'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주성분은 명확히 운전행위와 관련된 범법행위들이다. 이 두 번째 주성분을 '난잡운전'으로 명명하였다. 세 번째 주성분은 보행자 위반사항들이므로, 이것을 '위험보행'으로 명명하였다. 마지막 주성분은 고성방가, 쓰레기 투기, 노상폭력을 나타내는 주성분으로서, 말하자면 환경침해 행위들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마지막 주성분을 '환경침해'라고 명명하였다.

네개의 범법성 주성분들 사이의 상관관계가 <표 20>에 제시되었다. 전체적으로 네개의 범법성 범주들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미약하거나 없다고 사료된다. 즉 어떤 유형의 범법성이 높다고 하여 다른 유형의 범법성도 높은 것은 아니다.

4. 범법성과 사회인구학적 변인들 사이의 관계

성별, 연령, 직업, 교육수준에 따라 범법성의 차

표 19. 범법성의 주성분 구조

문항	주 성 분				Communality
	1	2	3	4	
상점 등에서 사소한 물건을 슬쩍 가져나오기	0.70	-0.02	-0.02	0.37	0.65
소득액을 줄여서 신고하기	0.43	0.07	0.01	-0.07	0.20
미성년(만 20세 미만)인 이성과의 육체적 접촉	0.45	-0.01	0.11	0.16	0.25
다른 사람의 주거지를 몰래 침입하기	0.98	-0.01	-0.02	0.01	0.96
100만원 정도의 규모로 도박하기	0.94	0.01	-0.02	0.01	0.89
대마초와 히로뽕 등의 범정마약을 섭취하기	0.98	-0.01	-0.02	0.01	0.96
100만원 정도의 규모로 사기치기	0.98	-0.01	-0.02	0.01	0.96
음주(맥주 1컵 이상)한 후 운전하기	0.01	0.87	0.01	0.03	0.76
규정속도보다 빨리 운전하기(20km/hr 이상 초과)	-0.01	0.77	0.01	-0.01	0.61
주차금지 장소나 다른 사람의 주차장소에 주차하기	0.07	0.87	0.01	0.01	0.77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길 건너기	-0.01	0.01	0.84	0.19	0.76
횡단보도에서 신호등을 무시하고 길 건너기	0.02	0.03	0.85	0.01	0.73
이웃사람에게 폐가 될 정도의 고성방가 혹은 소란행위	-0.02	0.01	-0.06	0.75	0.57
길가나 금지된 장소에서 휴지 등의 쓰레기 버리기	-0.04	0.03	0.21	0.53	0.33
노상에서 폭력을 사용하여 싸움하기	0.31	0.01	0.09	0.60	0.48
Eigenvalue	4.79	2.14	1.52	1.43	
%	32	14	10	10	

이가 존재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일련의 변량 분석(analysis of variance)을 실시하였다.

(1) 성별에 따른 범법성의 차이

성별에 따른 범법성 총점의 평균과 범법성의 각 주성분 점수들의 평균이 <표 21>에 제시되었다. 또한 성별을 독립변인, 범법성의 총점 및 각 주성분의 점수들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변량분석을 수행한 결과가 <표 22>에 제시되었다.

범법성 총점은 남자(-0.67)가 여자(-1.68)보다 평균적으로 높았다. 또한 범법성의 주성분 점수들도 대체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평균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여주었다. 다만 '파렴치' 주성분점수에서 여자(-0.25)가 남자(-0.73)보다 다시 평균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여주었다.

범법성 총점에서의 성별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

다($F_{(1,354)}=1.20$, n.s.). 또한 보행위반이나 파렴치성 범법행위는 남자들과 여자들이 비슷한 수준으로 행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난잡운전' 주성분과 '환경침해' 주성분에서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유의미하게 더 높은 범법성을 보여주었다($F_{(1,376)}=7.61$, $p<.01$; $F_{(1,387)}=10.23$, $p<.01$).

(2) 연령에 따른 범법성의 차이

연령에 따른 범법성 총점의 평균과 범법성의 각 주성분 점수들의 평균이 <표 23>에 제시되었다. 또한 연령을 독립변인, 범법성의 총점 및 각 주성분의 점수들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변량분석을 수행한 결과가 <표 24>에 제시되었다.

범법성 총점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점차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즉, 연령이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범법행위가 감소하는 것이다. 이 결과는 많은 외국 및 국내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런데 이 경향을 세부적으로 나누어보면 매우 흥미로운 결과가 주목된다. 파렴치성 범법행위는 20대 보다 30대에서 더 많이 보고되고 있다. 또한 난잡운전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점차로 증가한다.

표 20. 범법성 주성분들 사이의 상관관계

파렴치	1.00			
난잡운전	0.02	1.00		
위험보행	0.01	0.05	1.00	
환경침해	0.23**	0.03	0.21**	1.00

** $p<.01$

표 21. 성별에 따른 범법성 총점의 평균과 범법성의 각 주성분 점수들의 평균

범법성 점수	남 자			여 자		
	응답자수	평균	표준편차	응답자수	평균	표준편차
파렴치	195	-0.73	1.84	195	-0.25	9.67
난잡운전	184	0.30	3.72	194	-0.54	1.98
위험보행	188	-0.22	1.57	185	-0.32	1.39
환경침해	193	-0.05	1.97	196	-0.61	1.51
총 점	175	-0.67	5.08	181	-1.68	11.21

표 22. 범법성에 대한 성별의 효과

	자 승 합		자 유 도		F
	집단간	집단내	집단간	집단내	
종속변인					
파렴치	22.16	18807.80	1	388	0.46
난잡운전	66.69	3293.18	1	376	7.61**
위험보행	1.06	822.00	1	373	0.48
환경침해	31.38	1187.50	1	387	10.23**
범법성 총점	91.82	27092.22	1	354	1.20

** $p<.01$

표 23. 연령에 따른 범법성 총점의 평균과 범법성의 각 주성분 점수들의 평균

범법성 점수	20대			30대			40대			50대		
	응답자수	평균	표준편차	응답자수	평균	표준편차	응답자수	평균	표준편차	응답자수	평균	표준편차
파렴치	99	-0.66	2.18	98	0.55	13.61	93	-0.84	1.21	99	-1.01	1.05
난잡운전	99	-0.48	1.08	91	-0.14	1.95	93	-0.01	2.33	94	0.13	5.05
위험보행	94	0.51	2.31	88	-0.45	0.91	94	-0.53	1.05	98	-0.60	0.83
환경침해	96	0.40	2.79	96	-0.50	1.09	97	-0.50	1.43	99	-0.70	0.97
총 점	92	-0.20	5.06	84	-0.41	15.68	88	-1.86	3.76	91	-2.21	5.71

표 24. 범법성에 대한 연령의 효과

종속변인	자 승 합		자 유 도		F
	집단간	집단내	집단간	집단내	
파렴치	149.24	18680.08	3	385	1.03
난잡운전	20.63	3338.68	3	373	0.77
위험보행	78.38	744.60	3	370	12.98**
환경침해	71.91	1146.70	3	384	8.03**
범법성 총점	275.29	26980.11	3	351	1.20

** $p < .01$

표 25. 직업에 따른 범법성 총점의 평균과 범법성의 각 주성분 점수들의 평균

직업	범법성 점수				
	파렴치	난잡운전	위험보행	환경침해	총 점
봉급자	-0.89(148: 1.82)	0.38(139: 4.40)	-0.38(140: 1.25)	-0.54(148: 1.06)	-1.45(132: 5.23)
전문자영업	-0.93(22: 1.05)	0.22(21: 2.28)	-0.51(22: 0.73)	-0.67(23: 0.82)	-2.01(20: 3.23)
사(상)업	-0.20(47: 2.08)	0.14(46: 2.03)	-0.41(45: 0.79)	-0.04(48: 1.92)	-0.38(44: 4.39)
주부	-1.10(77: 0.88)	-0.62(75: 1.89)	-0.62(76: 0.89)	-0.87(77: 0.69)	-3.32(73: 2.66)
학생	1.18(70: 16.05)	-0.65(70: 0.53)	0.43(65: 1.91)	0.67(67: 3.15)	1.89(63: 18.25)
일용노무	-1.22(3: 0.05)	-0.83(3: 0.08)	-1.02(3: 0.69)	-0.46(3: 0.62)	-3.54(3: 1.29)
기타	-1.16(17: 0.30)	-0.74(18: 0.53)	0.42(18: 3.41)	-0.22(19: 1.84)	-1.32(15: 5.02)

평균(응답자수: 표준편차)

범법성 총점에서의 연령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F_{(3,351)}=1.20$, n.s.). 그러나 ‘위험보행’ 주성분과 ‘환경침해’ 주성분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범법행위가 감소하는 경향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_{(3,370)}=12.98$, $p < .01$; $F_{(3,384)}=8.03$, $p < .01$).

(3) 직업에 따른 범법성의 차이

직업에 따른 범법성 총점의 평균과 범법성의 각 주성분 점수들의 평균이 <표 25>에 제시되었다. 또한 직업을 독립변인, 범법성의 총점 및 각 주성분의 점수들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변량분석을 수행한 결과가 <표 26>에 제시되었다.

파렴치 행위에 있어서는 학생이 가장 높은 범법성 평균점수(1.18)를 보여주었다. 난잡운전은 봉급자가 가장 높은 평균점수(0.38)를 보여주었고, 위험보행은 학생(0.43), 환경침해 역시 학생(0.67)이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보여주었다. 범법성 총점에서는 학생이 가장 높았고(1.89), 일용노무가 가장 낮았다(-3.54). 그러나 일용노무는 응답자수가 세 명에 불과하므로 가장 낮은 범법성 총점을 보인 직업집단은 주부(-3.32)라고 사료된다.

범법성 총점에서의 직업차이는 유의미하였다($F_{(6,343)}=2.18$, $p < .05$). 범법성 총점에서의 유의미한

표 26. 범법성에 대한 직업의 효과

종속변인	자 승 합		자 유 도		F
	집단간	집단내	집단간	집단내	
파 령 치	268.62	18551.27	6	377	0.91
난잡운전	88.56	3265.16	6	365	1.65
위험보행	56.55	752.29	6	362	4.54**
환경침해	104.31	1111.91	6	376	5.88**
범법성 총점	998.65	26143.41	6	343	2.18*

* $p<.05$; ** $p<.01$

표 27. 교육수준에 따른 범법성 총점의 평균과 범법성의 각 주성분 점수들의 평균

교육수준	범 법 성 점 수				
	파 령 치	난잡운전	위험보행	환경침해	총 점
고졸이하	-0.57(47: 1.88)	0.37(47: 6.92)	-0.44(49: 1.02)	-0.41(49: 1.45)	-1.05(43: 8.18)
고 졸	-1.05(125: 0.78)	-0.31(121: 1.70)	-0.40(123: 1.65)	-0.50(124: 1.43)	-2.27(119: 3.31)
대 학 생	-0.69(66: 2.11)	-0.69(66: 0.47)	0.42(61: 1.96)	0.65(63: 3.18)	-0.28(59: 5.37)
대 졸	0.35(122: 12.24)	0.22(117: 2.47)	-0.40(116: 1.05)	-0.60(123: 0.87)	-0.32(110: 13.83)
대졸이상	-1.09(19: 0.47)	-0.21(17: 1.12)	-0.58(16: 0.90)	-0.74(19: 0.48)	-2.61(15: 1.60)

평균(응답자수: 표준편차)

표 28. 범법성에 대한 교육수준의 효과

종속변인	자 승 합		자 유 도		F
	집단간	집단내	집단간	집단내	
파 령 치	137.98	18688.57	4	374	0.69
난잡운전	52.58	3301.10	4	363	1.45
위험보행	37.23	755.64	4	360	4.43**
환경침해	77.32	1081.91	4	373	6.66**
범법성 총점	301.49	26690.11	4	341	0.96

* $p<.05$; ** $p<.01$

직업차이는 주로 위험보행($F_{(6,362)}=4.54$, $p<.01$)과 환경침해($F_{(6,376)}=5.88$, $p<.01$)에서의 직업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대부분의 직업차이는 학생집단이 높은 범법성 점수를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학생집단이 높은 범법성 점수를 기록한 것은 앞서 분석된 연령효과와 혼입(confounding)되어 있다. 따라서 나중에 연령효과와 직업효과를 분리하기 위한 분석을 수행할 예정이다.

(4) 교육에 따른 범법성의 차이

교육에 따른 범법성 총점의 평균과 범법성의 각 주성분 점수들의 평균이 <표 27>에 제시되었다. 또한 교육을 독립변인, 범법성의 총점 및 각 주성

분의 점수들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변량분석을 수행한 결과가 <표 28>에 제시되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교육수준과 범법행위 사이에는 명확한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즉, 교육수준이 높거나 낮을수록 범법행위의 정도가 심해지는 양상이 관찰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는 파렴치 행위에서는 대졸자(평균 0.35)가 가장 높은 범법성을 보인 반면, 난잡운전은 고졸이하(평균 0.37), 위험보행은 대학생(평균 0.42), 환경침해 역시 대학생(평균 0.65)이 가장 높은 범법성 점수를 보여주었다. 총점에서는 대학생(평균 -0.28)이 가장 높았고, 대졸이상(평균 -2.61)이 가장 낮

았다.

범법성 총점에서의 교육수준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F_{(4,341)}=0.96$, n.s.). 그러나 위험보행($F_{(4,360)}=4.43$, $p<.01$)과 환경침해($F_{(4,373)}=6.66$, $p<.01$)에서는 교육수준의 차이가 유의미하였는데, 이 유의미한 차이는 주로 대학생 집단과 대졸이상 집단의 차이에 기인한다. 따라서 이 차이도 연령효과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연령효과를 통제한 분석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5. 범법성에 대한 변인들의 전체효과

본 조사에서 검토된 준범요인들과 범법성 사이의 개별적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일련의 상관계수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여기에서 ‘개별적 관계’란 다른 변인들의 영향을 무시한 ‘전체효과(total effect)’를 의미한다. 본 조사에서 준범요인으로 검토된 13개의 변인들을 크게 5개의 범주로 구조화하였다. 그 5개의 범주는 경찰에 대한 반응(경찰에 대한 경험횟수, 경찰에 대한 전반적 평가, 경찰에 대한 태도), 사법부에 대한 반응(사법부에 대한 경험횟수, 사법부에 대한 전반적 평가, 사법부에 대한 태도), 처벌(처벌확률추정, 개인적 처벌효과 추정, 사회적 처벌효과 추정), 친인척과 본인

의 가치관(친인척의 의견, 준법에 대한 도덕관념과 규범), 그리고 법의 도덕성과 형평성(법의 도덕성 판단, 법의 형평성 판단)이다.

(1) 경찰에 대한 경험, 평가, 태도가 범법성에 미치는 영향

경찰에 대한 경험, 평가, 태도가 범법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계수들을 산출하였다. 이 상관계수들은 경험, 평가, 태도, 각각이 범법성과 어떤 종류이든 관계를 가지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 상관계수들이 <표 29>에 제시되었다. 또한 그들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일련의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가 <표 30>에 요약되었다.

일반적으로 경찰에 대한 반응들 중에 태도가 범법성과 가장 높은 상관계수를 가진다. 그런데 경찰에 대한 태도는 경찰에 대한 평가와 높은 상관관계(0.61)를 가지므로 평가의 효과를 통제한 후에도 태도가 범법성과 높은 관계를 유지하는지의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중다회귀분석을 하였다.

상관계수에 의해 파악된 것과 마찬가지로 경찰에 대한 경험, 평가, 태도 중 태도가 범법성에 가

표 29. 경찰에 대한 경험, 평가, 태도의 상호상관과 범법성과의 상관관계

경찰에 대한 반응	범 법 성					경찰에 대한 반응		
	총 점	파렴치	난잡운전	위험보행	환경침해	경험	평가	태도
경찰에 대한 경험	0.08	0.02	0.11	0.03	0.13	1.00		
경찰에 대한 평가	-0.15	-0.10	-0.03	-0.11	-0.16	-0.13	1.00	
경찰에 대한 태도	-0.18	-0.10	-0.08	-0.17	-0.19	-0.13	0.61	1.00

표 30. 경찰에 대한 경험, 평가, 태도와 범법성과의 회귀관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범법성)				
	총 점 β	파렴치 β	난잡운전 β	위험보행 β	환경침해 β
경찰에 대한 경험	0.06	-0.01	0.11**	0.01	0.10
경찰에 대한 평가	-0.06	-0.07	0.03	0.01	-0.07
경찰에 대한 태도	-0.14*	-0.06	-0.08	-0.20	-0.15*
R^2	0.04**	0.01	0.02	0.04**	0.06**

* $p<.05$; ** $p<.01$

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경찰에 대한 태도는 경찰의 권위인정, 신뢰성, 협조의지 등으로 이루어진 구성개념인데, 특히 보행위반의 여부($\beta = -0.20, p < .01$)와 쓰레기 투기, 고성방가, 노상폭력 등의 환경침해행위($\beta = -0.15, p < .05$)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분적으로 경찰에 대한 경험 자체가 난잡운전($\beta = 0.11, p < .01$) 및 환경침해($\beta = 0.10, p < .05$)와 유의미한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관련성은 그 방향이 분명치 않다. 즉, 경찰과 잦은 접촉을 가지는 것이 난잡운전과 환경침해를 증가시키는 요인인지, 아니면 난잡운전과 환경침해 행위를 다발적으로 하는 사람이 경찰과 잦은 접촉을 가지는 것인지가 분명치 않다.

전체적으로 볼 때, 경찰에 대한 경험, 평가, 태도는 범법성과 관련성을 가지는데($R^2 = 0.04, p < .01$), 특히 위험보행($R^2 = 0.04, p < .01$)이나 환경침해($R^2 = 0.06, p < .01$)와 같은 비교적 가벼운 범법행위들과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2) 사법부에 대한 경험, 평가, 태도가 범법성에 미치는 영향

사법부에 대한 경험, 평가, 태도가 범법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계수들을 산출

하였다. 이 상관계수들은 경험, 평가, 태도, 각각이 범법성과 어떤 종류이든 관계를 가지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 상관계수들이 <표 31>에 제시되었다. 또한 그들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일련의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가 <표 32>에 요약되었다.

경찰에 대한 반응들과는 달리, 특별히 사법부에 대한 태도가 범법성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않는다. 사법부에 대한 태도는 사법부에 대한 평가와 높은 상관관계(0.64)를 보여주었다.

사법부에 대한 반응은 전체적으로 범법성과 관계를 가지지 않았다. 유일하게 사법부에 대한 태도가 보행위반에 관하여 유의미한 예측력($\beta = -0.13, p < .05$)을 보여주었다. 경찰에 비하여 사법부는 시민들과 접촉이 드물고, 따라서 심리적으로 소원하여 사법부에 대한 평가나 태도가 시민들의 준법/범법행위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3) 범법성에 대한 처벌확률과 주관적 처벌심각성의 효과

처벌확률과 처벌의 주관적 심각성이 범법성을 줄이는 요인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처벌확률, 개인

표 31. 사법부에 대한 경험, 평가, 태도의 상호상관과 범법성과의 상관관계

사법부에 대한 반응	범 법 성					사법부에 대한 반응		
	총 점	파렴치	난잡운전	위험보행	환경침해	경험	평가	태도
사법부에 대한 경험	0.01	-0.01	0.00	0.06	0.04	1.00		
사법부에 대한 평가	-0.12	-0.05	-0.09	-0.13	-0.09	-0.03	1.00	
사법부에 대한 태도	-0.10	-0.04	-0.11	-0.15	-0.03	-0.04	0.64	1.00

표 32. 사법부에 대한 경험, 평가, 태도와 범법성과의 회귀관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범법성)				
	총 점 β	파렴치 β	난잡운전 β	위험보행 β	환경침해 β
사법부에 대한 경험	0.01	-0.01	0.00	0.06	0.06
사법부에 대한 평가	-0.09	-0.06	-0.03	-0.05	-0.11
사법부에 대한 태도	-0.06	0.00	-0.11	-0.13*	0.03
R^2	0.02	0.00	0.02	0.03*	0.01

* $p < .05$; ** $p < .01$

표 33. 처벌확률과 처벌효과의 상호상관과 범법성과의 상관관계

처벌확률과 심각성	범 법 성					처벌확률과 심각성		
	총 점	파렴치	난잡운전	위험보행	환경침해	확 른	개인적	사회적
처 벌 확 른	-0.10	-0.04	-0.11	-0.11	-0.05	1.00		
처벌의 개인적 효과	-0.10	0.00	-0.07	-0.20	-0.19	0.15	1.00	
처벌의 사회적 효과	-0.03	0.03	-0.07	-0.10	-0.14	0.07	0.40	1.00

표 34. 처벌확률 및 심각성과 범법성의 회귀관계

독 립 변 인	종속변인 (범법성)				
	총 점 β	파렴치 β	난잡운전 β	위험보행 β	환경침해 β
처 벌 확 른	-0.10	-0.04	-0.11*	-0.10	-0.04
처벌의 개인적 효과	-0.10	-0.02	-0.04	-0.19**	-0.16**
처벌의 사회적 효과	0.01	0.06	-0.05	-0.02	-0.09
R^2	0.02	0.01	0.02	0.05**	0.05**

* $p<.05$; ** $p<.01$

표 35. 친인척의 의견과 본인의 규범 사이의 상호상관과 범법성과의 상관관계

친인척의 의견과 본인의 규범	범 법 성					친인척의견과 본인규범	
	총 점	파렴치	난잡운전	위험보행	환경침해	친인척	본인
친인척의 의견	-0.09	0.00	-0.10	-0.11	-0.22	1.00	
본인의 규범	-0.08	0.01	-0.09	-0.15	-0.17	0.33	1.00

적 처벌효과, 그리고 사회적 처벌효과의 상호상관과 범법성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그 결과가 <표 33>에 제시되었다.

처벌확률($r=-0.10$)과 처벌의 개인적 효과($r=-0.10$)가 비슷한 정도로 범법성 총점을 예측하였다. 보행위반과 환경침해 등과 같이 비교적 가벼운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확률보다 개인적/사회적 처벌의 심각성이 더 높은 예측력을 보여주었다. 이들의 관계를 보다 구조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하였고, 그 결과가 <표 34>에 제시되었다.

처벌확률 및 처벌의 심각성 역시 위험보행($R^2=0.05$, $p<.01$)과 환경침해($R^2=0.05$, $p<.01$) 등과 같이 비교적 가벼운 범법행위에 대하여 예측력을 보여주었다. 처벌확률은 난잡운전에 대해 높은 예측력을 가지는데($\beta=-0.11$, $p<.05$), 이것은 교통단속을 자주 할수록 난잡운전이 줄어들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위험보행($\beta=-0.19$, $p<.01$)이나 환경침

해($\beta=-0.16$, $p<.01$)에 대해서는 처벌확률보다 처벌이 초래하는 개인적 불명예가 더 큰 범법예방요인으로 나타났다.

(4) 범법성에 대한 친인척의 의견과 본인의 규범의 효과

범법에 대한 친인척의 의견과 본인의 규범이 범법제지요인이 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한 것이 <표 35>에 제시되었고, 중다회귀분석의 결과가 <표 36>에 제시되었다.

다른 변인들과 마찬가지로 친인척의 의견과 본인의 규범도 주로 가벼운 범법행위(보행위반과 환경침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인척의 의견과 본인의 규범은 서로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r=0.33$)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친인척의 의견과 본인의 규범이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상관계수에 의해 추론되었던 내용이 회귀분석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되었다. 즉, 친인척의 의견과

표 36. 친인척의 의견 및 본인의 규범과 범법성의 회귀관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범법성)				
	총 점 β	파렴치 β	난잡운전 β	위험보행 β	환경침해 β
친인척의 의견	-0.07	0.00	-0.07	-0.07	-0.16**
본인의 규범	-0.06	0.02	-0.08	-0.14*	-0.13*
R^2	0.01	0.00	0.02	0.03**	0.06**

* $p<.05$; ** $p<.01$

표 37. 법의 도덕성 판단에 따른 범법성 평균과 표준편차

범법성	법의 도덕성 판단								
	관대			적절			엄격		
	응답자수	평균	표준편차	응답자수	평균	표준편차	응답자수	평균	표준편차
총 점	89	-0.56	15.28	204	-1.25	5.36	63	-1.81	3.42
파렴치	97	0.42	13.60	227	-0.79	1.96	66	-0.79	1.12
난잡운전	94	-0.10	2.17	219	-0.13	3.52	65	-0.16	1.81
위험보행	97	-0.38	1.61	213	-0.15	1.51	65	-0.47	1.11
환경침해	100	-0.66	0.85	225	-0.17	2.09	64	-0.37	1.54

표 38. 법의 형평성 판단과 범법성의 상관관계

법의 형평성	범법성				
	총 점	파렴치	난잡운전	위험보행	환경침해
법의 형평성	-0.07	-0.05	-0.07	0.07	-0.03

본인의 규범은 주로 위험보행($R^2=0.03$, $p<.01$)과 환경침해($R^2=0.06$, $p<.01$)와 같은 가벼운 범법행위에 영향을 준다. 위험보행에 대해서는 친인척의 의견보다 본인의 규범이 더 큰 영향을 가지고 있고, 환경침해에 대해서는 그 두 변인이 엇비슷한 영향력을 보여주었다.

(5) 범법성에 대한 법의 도덕성 및 형평성 판단의 효과

법의 도덕성 판단은 현행처벌규정이 관대한지, 엄격한지, 아니면 적절한지의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법의 도덕성 판단의 총점을 3등분하여 전체적으로 관대하다고 판단하는 집단,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집단, 그리고 엄격하다고 판단하는 집단으로 나누어 범법성의 평균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가 <표 37>에 제시되었다.

범법성 총점에서는 현행 처벌규정이 관대하다고 대답한 응답자들의 범법성 점수가 가장 높았고,

엄격하다고 응답한 집단의 범법성 점수가 가장 낮았다. 한가지 주목할 사항은 현행 처벌규정이 관대하다고 응답한 집단의 파렴치 점수(평균 0.42)가 가장 높다는 사실이다.

법의 형평성 판단이 범법결정요인이 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한 것이 <표 38>에 제시되었다.

법의 형평성 판단은 범법성 점수와 매우 낮은 상관관계들을 보여주어, 그 두 가지 변인들이 서로 독립적인 것으로 사료된다.

전체적으로 법의 도덕성 판단과 형평성 판단은 범법성에 영향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변인들과는 매우 대조되는 한가지 흥미로운 결과가 산출되었는데, 법의 도덕성 판단과 파렴치 행위가 유의미한 관계($\beta=-0.11$, $p<.05$)를 가지는 것이다. 현행 처벌규정이 엄격한 편이라고 보는 사람일수록 파렴치한 범법행위를 적게 범하

표 39. 법의 도덕성 및 형평성과 범법성의 회귀관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범법성)				
	총점 β	파렴치 β	난잡운전 β	위험보행 β	환경침해 β
법의 도덕성	-0.08	-0.11*	0.02	-0.03	0.06
법의 형평성	-0.07	-0.06	-0.08	0.09	-0.04
R^2	0.01	0.02*	0.01	0.01	0.01

* $p < .05$; ** $p < .01$

였다.

6. 범법성에 대한 변인들의 직접적 효과

본 조사에서 검토된 준법요인들과 범법성 사이의 직접적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일련의 위계적 중다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여기에서 ‘직접적 관계(direct effect)’란 다른 변인들의 영향을 고려한, 혹은 여과한 효과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본 조사에서 준법요인으로 검토된 5개 범주의 변인들이 각기 다른 변인들의 효과와 독립적으로 범법성에 대해 가지는 효과를 파악한 것이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5개의 변인범주는 경찰에 대한 반응(경찰에 대한 경험횟수, 경찰에 대한 전반적 평가, 경찰에 대한 태도), 사법부에 대한 반응(사법부에 대한 경험횟수, 사법부에 대한 전반적 평가, 사법부에 대한 태도), 처벌(처벌확률추정, 개인적 처벌효과 추정, 사회적 처벌효과 추정), 친인척과 본인의 가치관(친인척의 의견, 준법에 대한 도덕관념과 규범), 그리고 법의 도덕성과 형평성(법의 도덕성 판단, 법의 형평성 판단)이다.

직접적 효과를 검증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모든 변인들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전체모형(full model)’으로부터 산출된 ‘결정계수(coefficient of determination)’를 R^2_f 라고 지칭한다. 그 다음, 직접적 효과를 산출하려는 변인범주를 독립변인에서 제외한 후 재차 중다회귀분석을 하였다. 이 ‘축소모형(reduced model)’에서 산출된 결정계수를 R^2_r 라고 지칭한다.

직접적 효과는 $R^2_f - R^2_r$ 에 의해 산출되었다. 이 직접적 효과를 ΔR^2 라고 지칭한다. 결과가 <표 40>에 요약되었다.

범법성 총점이 종속변인인 경우에 전체모형의 R^2_f 는 0.0629, 파렴치 점수가 종속변인인 경우가 0.0396, 난잡운전은 0.0642, 위험보행은 0.1135, 마지막으로 환경침해가 종속변인인 경우에 전체모형의 R^2_f 는 0.1108 이었다.

전체적으로 두개의 유의미한 직접적 효과가 산출되었다. 첫째는, 위험보행에 대한 법의 도덕성 및 형평성의 효과($\Delta R^2 = 0.0335$, $F_{(2,267)} = 5.045$, $p < .01$)이다. 둘째로는 경찰에 대한 경험횟수, 평가, 태도가 환경침해에 대해서 가지는 직접적 효과가 유의미하였다($\Delta R^2 = 0.0305$, $F_{(3,267)} = 3.035$, $p < .01$).

논 의

시민들이 경찰과 접촉하는 경우에 먼저 능동적으로 접촉하는 경우보다는 점문이나 단속에 의하여 수동적으로 접촉하는 경우가 다소 더 많고, 또한 경찰과 접촉하는 평균 횟수(2.66회)가 매우 적다는 것은 경찰과 시민들 사이의 친근감이 결여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경찰의 정직성과 신뢰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며, 시민들의 신변에 관한 경찰력의 행사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대한 전반적 평가는 다소 부정적인 방향에 편중되어있긴하지만,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견해를 가진 응답자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응답자가 고루 분포되어 있다. 또한

표 40. 범법성 점수에 대한 준법요인들의 직접적 효과

범법성 점수	직접적 효과	ΔR^2	자유도	F
총 점 ^a	경찰에 대한 반응 ^f	0.0249	3, 267	2.365
	사법부에 대한 반응 ^g	0.0005	3, 267	0.048
	처벌 ^h	0.0047	3, 267	0.446
	규범 ⁱ	0.0015	2, 267	0.214
	법정의 ^j	0.0076	2, 267	1.083
과범치 ^b	경찰에 대한 반응	0.0122	3, 267	1.130
	사법부에 대한 반응	0.0021	3, 267	0.194
	처벌	0.0034	3, 267	0.315
	규범	0.0003	2, 267	0.042
	법정의	0.0157	2, 267	2.181
난잡운전 ^c	경찰에 대한 반응	0.0183	3, 267	1.743
	사법부에 대한 반응	0.0090	3, 267	0.857
	처벌	0.0132	3, 267	1.257
	규범	0.0058	2, 267	0.829
	법정의	0.0028	2, 267	0.400
위험모행 ^d	경찰에 대한 반응	0.0162	3, 267	1.627
	사법부에 대한 반응	0.0173	3, 267	1.648
	처벌	0.0218	3, 267	2.076
	규범	0.0055	2, 267	0.828
	법정의	0.0335	2, 267	5.045**
환경침해 ^e	경찰에 대한 반응	0.0305	3, 267	3.053**
	사법부에 대한 반응	0.0059	3, 267	0.591
	처벌	0.0016	3, 267	0.160
	규범	0.0116	2, 267	1.742
	법정의	0.0022	2, 267	0.330

a $R^2=0.0629$; b $R^2=0.0396$; c $R^2=0.0642$; d $R^2=0.1135$; e $R^2=0.1108$.

f 세개의 변인 (경찰에 대한 경험횟수, 평가, 태도)

g 세개의 변인 (사법부에 대한 경험횟수, 평가, 태도)

h 세개의 변인 (처벌확률, 개인적 처벌효과, 사회적 처벌효과)

i 두개의 변인 (친인척의 의견, 본인의 규범)

j 두개의 변인 (법의 도덕성, 법의 형평성 판단)

* $p<.05$; ** $p<.01$

대다수의 응답자는 경찰의 권위를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경찰이 시민들에게 그 정직성과 신뢰성에 대한 믿음을 심어준다면 시민들과 매우 긴밀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것으로 사료된다.

경찰의 치안활동에 대한 신뢰를 증가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일반시민들이 가장 많이 접촉하는 경찰은 교통경찰과 파출소 외근경찰이다. 또한 범죄억제에 가장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경찰의 기능은 순찰과 방범심방이다(이건중·전영실, 1994). 한국의 지역적 특성상 차량순찰보다는 도보순찰이 더 효과적일 뿐 아니라 지역주민과의 유대를 강화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교통경찰은 시민과의 견해차이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마찰이 빈번하고, 단속대상인 행위가 전통적 윤리성과의 관련성이 희박하고 경찰개인에 의해 인정되는 재량권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생긴 경찰에 대한 감정이나 경찰부패의 인상은 경찰본연의 임무에 대한 시민의 협조를 저해하고 경찰관계자의 자긍심을 손상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신현주, 1990). 일선파출소의 외근경찰이 특수근무로서 교통정리를 하는 것은 교통경찰의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피상적인 업무수행을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외근경찰의 다른 중요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교통경찰과 관련된 신뢰성 상실은 전문성 부족에서 올 가능성이 높다.

경찰에 대한 정서적 호감도(태도)가 비교적 가벼운 범법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경찰에 대한 정서적 호감도가 사소한 범법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경찰에 대한 ‘평가’가 이성적이고 이지적인 반응이라면, ‘태도’는 보다 정서적인 감정반응이다. 따라서 경찰의 대민정책은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정서와 감정을 순화하는 요소를 보강하고, 정서적 친근감을 높이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도로의 구조 혹은 시설물 설치상황에 의해서 운전자들이 오인 혹은 판단착오를 일으키기 쉬운 지역에서는 위반차량의 적발보다는 교통지도 위주의 교통단속을 시행하는 것이 좋다. 그러한 지역에서 경찰관이 숨어있거나 멀리 떨어진 곳에 있다가 위반하는 차량을 단속한다면, 시민들은 단속경찰의 의도를 불신하게 되고, 경찰에 대하여 부정적인 정서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교통위반단속의 일차적 목표가 법규위반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일진데(이순철과 박창수, 1997), 부지불식간에 위반이 발생하기 쉬운 장소에서 행해지는 그와 같은 단속관행은 일견 예방과는 거리가 먼 단속방식으로 지각되어서 공정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될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경찰에 대하여 부정적인 정서를 가지는 경우, 그러한 낮은 호감도는 환경침해나 보행위반과 같은 경범죄의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 그러나 경범죄가 중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언제나 상존하므로 경찰에 대한 태도가 경범죄의 발생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사법부에 대한 반응의 전반적 경향은 시민들이 사법부에 대하여 정서적으로 매우 소원하여 특별히 호감이나 불호감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한 연유로 인하여 사법부에 대한 반응은 범법성에도 특별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사법관의 정직성과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배려에 대하여 회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고, 판결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양분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응답자의 절대 다수는 다른 시민과 사소한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법원의 중재에 의존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상대가 정부인 경우에는 사소한 분쟁이라도 법원에 제소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 개인과 정부의 분쟁에서 절대적인 열세에 있을 수밖에 없는 개인이 사법부에 의지하는 경우, 사법부는 특히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신중한 배려를 해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성문법 전통의 법제도하에서 살아온 한국의 일반 시민들이 판사의 판결과 경찰의 공권력 행사는 그 “법적 효력”을 덜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준법에 대한 대민 홍보와 교육의 내용중에 판사의 판결과 경찰의 합법적인 공권력 행사가 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것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시민의 법질서 의식과 치안행정은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가 시사하는 것은 시민의 법질서 의식의 저변에는 치안행정과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가 크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치안행정은 그 특질상 집행활동의 가시성이 높고, 집행을 둘러싼 논란, 갈등 및 반발의 강도가 높기 때문에 이미지 개선이 용이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정정길, 1992). 그러나 행정당국이 치안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진지하게 수용한다면 경찰과 사법기관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는 덩달아 증대되고, 준법행동도 증가할 것이다.

응답자들은 본 조사에서 고려된 탈법행위를 하

는 경우 종류를 불문하고 처벌받을 확률이 약 0.39 정도인 것으로 추정한다. 다시 말해서 모든 탈법자의 약 1/3이 처벌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확률의 추정에는 심한 개인차가 존재하여 사람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처벌받을 확률이 높다고 추정한 응답자일수록 난잡운전의 경향이 낮았다. 따라서 잦은 교통단속이 운전자들의 교통법규위반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처벌확률과 심각한 범법행위(파렴치 행위) 사이에는 유의미한 관련성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높은 처벌확률이 심각한 범법행위에 대하여 제지효과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높은 처벌확률이 준법요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처벌의 효과에 관한 결과에서도 확인되었다. 대부분의 응답자는 법적인 처벌은 심각한 개인적 불명예가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법을 어기는 것 자체보다 처벌받는 것이 약간 더 심각한 것으로 응답되었으나, 그 차이는 매우 미약하였다. 다시 말해서, 법을 어긴다는 것 자체가 처벌받는 것에 못지 않게 주위 사람들과 직장에서 있어서는 안될 일인 것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처벌 자체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주위사람들로부터의 비난과 체면손상이 더 큰 준법요인인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범법행위에 대해서 부모와 배우자의 의견이 가장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시민들의 준법성향을 높이기 위해서는 빈번한 단속보다 준법규범을 고양할 수 있는 대민 홍보와 교육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대부분의 시민들은 준법행위에 대하여 보수적인 가치관과 규범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준법성향을 높이기 위한 대민 홍보와 교육은 매우 신속한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경기도 김포군 양촌면의 마을청년들로 구성된 “기동순찰대”, 서울 중암경찰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향장제도” 등이 그 예이다. 향장제

도는 마을의 덕망있는 노인들을 향장으로 지명하여 청소년, 부녀자들의 사소한 잘못을 가려 타 이르거나 격려, 칭찬함으로써 주민들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방법활동을 활성화하는데 역점을 둔다. 물론 이러한 제도들은 주민들이 그 정당성을 자발적으로 인정해야만 효과가 있을 것이다. 과거에 자발적으로 형성되고 운영되면 좋았을 제도들이 공식화되고 정형화되는 바람에 오히려 피상적인 것으로 전락하고 만 사례들이 있었다는 점을 상기 해야할 것이다(이건중·전영실, 1994).

응답자들은 본 조사에서 고려된 탈법행위에 관한 현행 처벌규정을 대체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지만, 이 판단에는 매우 큰 개인차가 존재한다. 따라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나, 본 조사에서는 재정적 한계로 인하여 너무 적은 수의 응답자들이 조사되었기 때문에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점은 후속연구에서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처벌규정의 적절성 판단이 파렴치 행위와 같은 심각한 범법행위와 관련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관련성은 파렴치 행위를 범하고 처벌받은 사람들이 현행 처벌규정을 지나치게 엄격한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관련성의 방향이 의미하는 것은 현행 처벌규정이 엄격한 편이라고 보는 사람일수록 파렴치한 범법행위를 적게 범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의 연구들과는 달리 처벌의 강도가 심각한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지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앞서 논의된 처벌의 확률(빈번한 단속)은 범법성에 대하여 그러한 관련성을 가진다는 결과는 외국의 연구들과 상반된다. 따라서 이점은 앞으로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보다 신중하게 연구될 필요가 있다.

본 조사의 응답자들은 탈법행위에 대한 법적용이 전반적으로 불형평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

각한다.

외국에서의 일관된 결과들과 마찬가지로 범법성은 연령과 부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증가할수록 범법성은 감소한다. 그러나 이 경향은 비교적 가벼운 범법행위에서 관찰되는 경향이며, 비교적 심각한 파렴치 범법행위에서는 30대가 가장 높은 범법성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만약 국가나 경찰이 준법정신에 관하여 대민 홍보나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홍보와 교육의 내용을 적절한 연령층에 맞추어 구성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난잡운전이나 환경침해 등과 같은 범법행위에 대한 대민 홍보와 교육은 주로 20대를 겨냥하여 그 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는 반면, 파렴치한 범법행위에 대한 대민 홍보와 교육은 주로 30대를 겨냥하여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전체적으로 볼 때 본 연구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은 가벼운 범법행위들에 대하여 경찰에 대한 태도와 법의 도덕성 및 형평성에 대한 판단이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이다(<표 41> 참조). 결론적으로 말해서, 경찰에 대하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 호감의 정도와, 법의 규정들이 적절한가, 그리고 법이 형평에 맞게 적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 가장 중요한 준법요인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 준법요인들 중에 정서적 호감과 형평적인 법적용은 경찰의 치안정책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인들이다. 쉽게 말해서 경찰이 시민들과 더욱 친밀해지고,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획득한다면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준법경향을 크게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믿어진다.

결론

법적으로는 범죄행위와 그 행위에 의해 초래되는 결과가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므로 행위의 종류와 그 행위의 결과에 따라서 중범죄, 경범죄,

대인범죄, 대물범죄, 폭력범죄, 화이트 칼라범죄, 정치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학문은 행위의 원인과 이유에 주목한다. 다시 말해서 학문의 궁극적 관심은 범죄행위 그 자체라기 보다는 ‘범죄성(criminality)’이다. 따라서 학문적으로는 살인, 강간, 횡령 등의 중범죄와 교통법규위반, 가벼운 탈세, 고성방가 등의 경범죄 등을 구별하는 것이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사회의 질서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라는 측면에서 소수로 발생하는 중범죄가 다수로 발생하는 경범죄보다 더 중요하거나 더 위협적으로 인식되어야 할 이유와 필요가 존재하지 않는다. Gottfredson & Hirschi(1990)와 같은 범죄학자들은 범죄의 종류를 구별하는 것은 범죄행위와 준법행위를 이해하는데 오히려 장애가 된다고 주장한다. 범죄행위 혹은 범법행위가 경범죄, 중범죄, 대물범죄 혹은 대인범죄에 귀착하는지의 여부는 많은 경우에 상황적인 우연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단순절도를 계획하였다가 절도행위의 도중 발각되면 강도나 살인을 범하게 되는 예가 많다. 대부분의 살인은 우발적으로 혹은 과실에 의해 발생한다. 또한 사체를 토막내거나 유기하는 것이 특별히 악마적인 속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증거를 없애려는 노력의 결과인 경우가 많다. 실제로 상습적인 범죄자들은 특정한 종류의 범죄만을 전문적으로 범하기보다는, 크고 작은 각종 범죄를 무작위적으로 범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형사범은 2개 이상, 흔히 7-8개 이상의 죄목이 병합하여 기소된다(가택침입과 강간, 절도와 살인, 횡령과 유괴 등). 따라서 범죄성에 주목하는 학문적 관점에서는 각종 범죄구분이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준법의 이유를 파악하는 것은 행위자를 미래지향적, 합목적적 존재로 파악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관점은 법의 기본적인 인간관 및 행위에 대한 자유의지론적 전제와 매우

잘 합치한다. 준법의 이유에 관한 연구들이 법의 도덕성과, 형평성 그리고 법집행 기관에 대한 권위인정을 법에 대한 사람들의 규범성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들로 간주하고 있지만, 그 요인들을 규범성에 대한 결정론적인 원인으로 보지는 않는다. 이 연구들이 강조하는 것은 앞서 설명한 ‘거울이론’이 시사하듯이 국민들이 고유하게 보유하고 있는 규범성을 법과 법집행기관이 잘 반영할 때 그러한 규범성이 준법행위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국민이 법적 행위의 자유로운 주체이고, 이 주체는 행위를 통하여 법과 제도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표현한다는 관점이다. 법의 도덕성 및 형평성이 국민들의 관념과 일치하고, 국민들이 경험에 의하여 법집행 기관이 공정하며 정직하다는 믿음을 가질 때 대다수의 국민들은 법의 준수에 대한 규범을 내면화하게 되고 자발적인 준법행위를 하게 될 것이다. 국민들의 이러한 자발적인 준법행위는 국가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사회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다.

참 고 문 헌

- 박광배(1995). *法심리학*. 서울: 정민사.
- 류운상 · 박광배 · 김유진(1996). 탈세에 대한 형평성과 정보처리양식의 상호작용효과. *한국사회심리학회지*.
- 신현주(1990). *민생치안범죄규제의 전략과 이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이건중 · 전영실(1994). 각국의 범죄예방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이순철 · 박창수(1997). 교통위반의 지도단속방법과 유형개발에 관한 연구. *치안논총*, 13, 187-293.
- 정정길(1992). 경찰업무의 효율적 집행을 저해하는 요인과 이의 극복방안. *치안논총*, 9, 201-222.
- Aberbach, J. D. & Walker, J. L.(1970). Political trust and racial ideolog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4, 1199-1219.
- Archer, D. & Gartner, R.(1984). *Violence and Crime in Cross-national Perspective*.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Bailey, W. C.(1990). Murder, capital punishment, and television: Execution publicity and homicide rat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5, 628-633.
- Bailey, W. C. & Peterson, R. D.(1989). Murder and capital punishment: A monthly time-series analysis of execution publici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4, 722-743.
- Bowers, W.(1988). The effect of executions is brutalization, not deterrence. In K. Haas & J. Incardi(Eds.), *Challenging Capital Punishment: Legal and Social Science Approaches*.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 Bowers, W. & Pierce, G.(1980). Arbitrariness and discrimination under post-Furman capital statutes. *Crime and Delinquency*, 26, 563-635.
- Bruck, D.(1985). The death penalty: An exchange. *New Republic*, May, 20-21.
- Carroll, J. S.(1987). Compliance with the law: A decision-making approach to taxpaying. *Law and Human Behavior*, 11, 319-335.
- Citrin, J.(1977). Political alienation as a social indicator: Attitudes and ac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4, 381-419.
- Craig, S. C. & Wald, K. D.(1985). Whose ox to gore? A comme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al discontent and political violence. *Western Political Quarterly*, 38, 652-662.

- Davis, M.(1989). Neural systems involved in fear-potentiated startle. In M. Davis, B. L. Jacobs, & R. I. Schoenfeld(Eds.),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Vol. 563: Modulation of defined neural vertebrate circuits*(p.165-183). New York: Author.
- Erickson, M. & Gibbs, J.(1980). Punishment, deterrence, and juvenile justice. In D. Schichor & D. H. Kelly(Eds.), *Critical Issues in Juvenile Delinquency*. Lexington, Massachusetts: Lexington Books.
- Gertz, M. G. & Gould, L. C.(1995). Fear of punishment and the willingness to engage in criminal behavior: A research note. *Journal of Criminal Justice*, 23, 377-384.
- Gibson, H. B.(1967). Self-reported delinquency among schoolboys and their attitudes toward the police. *British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6, 168-173.
- Glassner, B., Ksander, M., Berg, B., & Johnson, B.(1983). A note on the deterrent effect of juvenile vs. adult jurisdictions. *Social Problems*, 31, 219-221.
- Gottfredson, M. R. & Hindelang, M. J.(1977). A consideration of telescoping and memory decay biases in victimization surveys. *Journal of Criminal Justice*, 5, 205-216.
- Gottfredson, M. R. & Hirschi, T.(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Grasmick, H. G. & Green, D. E.(1980). Legal punishment, social disapproval, and internalization as inhibitors of illegal behavior.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71, 325-335.
- Haney, C. & Logan, D. D.(1994). Broken promise: The Supreme Court's response to social science research on capital punishment. *Journal of Social Issues*, 50, 75-101.
- Jacobs, H.(1980). Deterrent effects on formal and informal sanctions. In J. Brigham & D. W. Brown(Eds.), *Policy Implementation*.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s.
- Jaros, D. & Roper, R.(1980). The U.S. Supreme Court: Myth, diffuse support, specific support, and legitimacy. *American Politics Quarterly*, 8, 85-104.
- Kaplan, D. A.(1990). *Breaking the death barrier*. Newsweek, 115, 72-73.
- Kassin, S. M. & Wrightsman, L. S.(1988). *The American Jury on Trial*. New York: Hemisphere.
- Klepper, S. & Nagin, D.(1989). The deterrent effect of perceived certainty and severity of punishment revisited. *Criminology*, 27, 721-746.
- Lehnen, R. G. & Skogan, W. G.(1981). *The national crime survey: Working papers. Vol. 1*. Washington: U. S. Department of Justice.
- Lempert, R.(1981). Desert and deterrence: Assessing the moral bases of the case for capital punishment. *Michigan Law Review*, 79, 1177-1231.
- Meier, R. F. & Johnson, W. T.(1977). Deterrence as social control: The legal and extralegal production of conformi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2, 292-304.
- Mueller, E. N.(1972). A test of a partial theory of potential for political violenc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6, 928-959.
- Mueller, E. N.(1977). Behavioral correlates of political support.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

- view, 71, 454-467.
- Mueller, E. N.(1979). *Aggressive Political Participa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Muller, E. N., Jukam, T. O., & Seligson, M. (1982). Diffuse political support and anti-system political behavior: A comparative analysi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6, 240-264.
- Nietzel, M. T.(1979). *Crime and Its Modification: A Social Learning Perspective*. New York: Pergamon Press.
- Ødegård, E.(1995). Legality and legitimacy: On attitudes to drugs and social sanctions. *The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35, 525-542.
- Paternoster, R., Saltzman, L. E., Waldo, G. P., & Chiricos, T. G.(1983). Estimating perceptual stability and deterrent effects: The role of perceived legal punishment in the inhibition of criminal involvement.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74, 270-297.
- Patrick, C. J.(1994). Emotion and psychopathy: Startling new insights. *Psychophysiology*, 31, 319-330.
- Robinson, P. H. & Darley, J. M.(1995). *Justice, Liability, & Blame: Community Views and the Criminal Law*. Boulder: Westview Press.
- Saltzman, L., Paternoster, R., Waldo, G. P., & Chiricos, T. G.(1982). Deterrent and experiential effects: The problem of causal order in perceptual research.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19, 172-189.
- Schneider, A. L.(1977). *The Portland forward records check of crime victims*. Washington: Law Enforcement Assistance Administration.
- Seligson, M. A.(1980). Trust, efficacy, and modes of political participation: A study of Costa Rican peasants.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0, 75-98.
- Sellin, T.(1968). *Capital Punishment*. New York: United Nations Publications.
- Silberman, M.(1976). Toward a theory of criminal deterrenc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1, 442-461.
- Teevan, J. J.(1976). Subjective perception of deterrence(continued).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13, 155-164.
- Tittle, C. R.(1980). *Sanctions and Social Deviance: A Question of Deterrence*. New York: Praeger.
- Tyler, T. R.(1990). *Why People Obey the Law*.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 Useem, B.(1982). Trust in government and the Boston anti-busing movement. *Western Politics Quarterly*, 35, 81-91.
- Vaughn, M. S., Huang, F. F. Y., & Ramirez, C. R.(1995). Drug abuse and anti-drug policy in Japan. *The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35, 491-524.
- Vrana, S. R., Spence, E. L., & Lang, P. J.(1988). The startle probe response: A new measure of emo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7, 487-491.
- Walker, N. & Hough, M.(1988). *Public Attitudes to Sentencing-Surveys from Five Countries*. Aldershot: Gower Publishing Company.
- Wesbrook, S. D.(1980). Sociopolitical alienation and military efficiency. *Armed Forces and Society*, 6, 170-189.
- Wilkes, J.(1987). Murder in mind. *Psychology Today*, June, 26-32.
- Wright, J. D.(1976). *The Dissent of the Governed*:

- Alienation and Democracy in America*. New York: Academic Press.
- Zeisel, H.(1976). The deterrent effect of death penalty: Facts and faiths. *Supreme Court Review*, 317-343.
- Zimring, F. & Hawkins, G.(1986). *Capital Punishment and the American Agend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Influencing Factors for Citizens' Voluntary Conformity of the Law

Kwang B. Park¹ and Eunkyung Jo²

¹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² Department of Psychology, Hallym University

Four hundred citizens residing in a large and a medium size cities(Seoul and Cheongju respectively) in South Korea were interviewed to determine how they perceive the morality, the equity and the authority of the law and law enforcement agents and whether those perceptions influence behavioral observances of the law. It was found that citizens' attitude toward the police and their perceptions of the morality and the equity of the law are influencing factors for such minor violations of the law as traffic violations and street disturbances. Based on these findings, it was expected that citizens' voluntary conformity of the law will be significantly promoted when the police improves the contacts with the citizens and earns confidence among them.